



세법연구 21-05

www.kipf.re.kr

세법연구 21-05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주주 과세효과 -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주주 과세효과 -

2021. 9

| 전병목 · 박수진 · 서동연 |

세법연구 21-05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주주 과세효과 -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주주 과세효과 -

2021. 9

| 전병목 · 박수진 · 서동연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전 병 목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서 동 연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12
1. 회사법	12
가. 이익배당 등	14
나. 분배제한규제(배당가능이익)	19
2. 세법	21
가. 과세개요	21
나. 주주 과세	31
다.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처리	34
III. 주요국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36
1. 미국	36
가. 회사법	36
나. 세법	39
2. 일본	57
가. 회사법	57
나. 세법	63
3. 독일	80
가. 회사법	80
나. 세법	85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97
1. 국제비교	97
가. 회사법	97
나. 세법	101
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소득 국가별 비교	113
2. 시사점	122
가. 자본준비금 감소제도 적용 사례	122
나. 세법 규정 개선안	125
 참고문헌	 135

표 목차

〈표 II-1〉 주주의 회사재산 유출의 유형 및 통제 방법	12
〈표 II-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	21
〈표 II-3〉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재원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여부	25
〈표 II-4〉 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무처리 관련 유권해석	29
〈표 III-1〉 세무신고 유형과 과세표준별 연방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2021년)	44
〈표 III-2〉 초과 분배금의 배분	46
〈표 III-3〉 분배금이 당해 과세연도 E&P를 초과하는 경우(예시 (3) 참조)	52
〈표 III-4〉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예시 (4) 참조)	54
〈표 III-5〉 일본 「회사법」상 잉여금 산정방법(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61
〈표 III-6〉 일본 「회사법」상 잉여금 산정방법(배당 등의 효력 발생일 기준)	61
〈표 III-7〉 일본 「회사법」상 분배가능액 산정방법(배당 등의 효력 발생일 기준)	62
〈표 III-8〉 양도수입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68
〈표 III-9〉 양도소득 계산 및 주식의 취득가액 조정	69
〈표 III-10〉 잉여금배당 등에 대한 배당공제	72
〈표 III-11〉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과 회계상 자본항목 비교	76
〈표 III-12〉 독일 「주식법」 제158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이익 산출(이익처분)	85
〈표 III-13〉 독일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및 이익분배(배당) 처리의 예시	88
〈표 III-14〉 회계상 대차대조표 자본과 세무상 자본 비교	92

〈표 IV-1〉 조사국별 「회사법」 등에 따른 배당(분배) 재원과 한도	99
〈표 IV-2〉 조사국별 배당(분배)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회사법」상 회사재산 유출 ..	100
〈표 IV-3〉 조사국별 세무상 법인 소득과 납입 자본의 구분 규정	102
〈표 IV-4〉 조사국별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	104
〈표 IV-5〉 조사국별 이익잉여금 등 자본전입 관련 주주 과세	107
〈표 IV-6〉 조사국별 자기주식 취득 대가 관련 주주 과세	108
〈표 IV-7〉 조사국별 배당소득 이중과세 경감 방안	110
〈표 IV-8〉 조사국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무처리	112
〈표 IV-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예시	114
〈표 IV-10〉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국가별 배당소득 현황(20X1~20X3년)	117
〈표 IV-1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국가별 양도소득 현황(20X2~20X4년)	118
〈표 IV-12〉 주식 양도 시 국가별 양도소득 현황(20X4년)	119
〈표 IV-1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총과세소득 현황 (20X1~20X4년)	121
〈표 IV-14〉 상장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소 사례	123
〈표 IV-15〉 이익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 과세소득	129
〈표 IV-16〉 법정준비금 감소제도 전후 우리나라의 재무상태표(예시)	132
〈표 IV-17〉 법정준비금 감소제도 전후 일본의 재무상태표(예시)	133

그림 목차

[그림 II-1]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방법 및 순자산 계정 간 이동	13
---	----

I. 서론

- 주주 집합체인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주주에게 귀속되지만, 법인 소득이 생길 때마다 주주에게 바로 그 소득을 내보내지 않는 까닭에 주주 과세는 법인 소득이 사외로 유출될 때까지 지연됨
-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먼저 매기고, 재산 유출의 형태로 법인 소득이 주주에게 분배될 때 소득세를 매김¹⁾
 - 법인 소득은 주주 납입 자본(paid-in capital)과 주주와의 자본거래²⁾로 인한 순자산 증가분과는 구별되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익)으로 이익잉여금 또는 유보된 소득(이익)을 말함³⁾⁴⁾
- 우리나라 세법은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각각을 과세 사건으로 포착하여 주주 과세하는데 「상법」상 배당 절차를 통해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물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⁵⁾

1) 법인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주주(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주주(출자자)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동업기업과세 또는 특수목적 법인의 소득공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2) 현행 세법과 「상법」은 자본거래의 개념을 명문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 명칭을 사용함(「법인세법」 제17조; 「상법」 제459조). 황남석(2016, p. 226)에 따르면 「상법」 및 회계상 자본거래를 ‘사원이 사원의 자격에 기하여 회사에 대해 출연하거나 회사로부터 분배를 받는 거래’로, 손익거래는 ‘그 외 회사의 순자산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로 정의함

3) 임상엽, 2018, p. 166.

4) 이와 같이 납입 자본 등과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법인 소득을 구분한 연유는 기간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납입 자본 등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황남석, 2016, pp. 210~226)

5) 비록 「상법」상 배당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자본금 감소(감자), 불균등 자본전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청산, 해산, 합병, 분할 등에 따라 주주가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함(「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상법」상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에는 이익배당,⁶⁾ 상환주식 상환,⁷⁾ 자기주식 취득,⁸⁾ 자본감소, 잔여재산의 분배, 합병교부금 지급 등이 있음
- 영업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은 소득 전부를 주주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유출 한도를 정함⁹⁾
- 배당소득의 과세 징표로 볼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을 따르는데 「상법」 개정 이후 자본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한 후 배당 절차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 ('준비금 감액배당')가 관찰됨
 - 본래 주주의 납입 자본 원본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금 전입으로 그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법정준비금 감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으로의 전입이 허용됨¹⁰⁾
- 현행 세법에서는 주주가 수령하는 준비금 감액배당을 납입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¹¹⁾
 - 주주가 수령한 준비금 감액배당 상당액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수령액은 없는 것으로 세무 처리함¹²⁾
 -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발생순서와 상관없이 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함¹³⁾

6) 「상법」 제462조

7) 「상법」 제345조 제1항

8) 「상법」 제341조

9) 자본감소, 잔여재산 분배, 합병교부금 지급 등은 재원의 제한이 없지만 채권자 보호절차가 요구됨(정준혁, 2018, p. 200)

10)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제461조의 2의 법정준비금 감소제도가 신설되면서 법정준비금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금액을 배당가능이익으로의 전입이 허용됨. 이익준비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법인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마다 그 일부를 따로 떼어 적립한 금액이므로 본래 납입 자본 원본인 자본준비금과는 다르게 통상적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함

11)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1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740. 2018. 6. 22.)

1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76. 2016. 7. 12.)

- 현행 세법은 배당재원의 결정과 회계정책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지만,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조세남용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함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준비금 감액배당과 관련된 우리나라 세법 규정의 개선사항을 살펴봄
 - 미국, 일본, 독일의 「상법」 또는 관련 법령¹⁴⁾에 따른 회사재산 유출 관련 규정과 소득세 규정을 문헌 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봄
 - 연구 범위에 있어서 법인의 범위를 주식회사(우리나라) 또는 이와 유사한 물적회사로 한정함
 -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통상적인 경로는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 감자, 청산, 합병 및 분할 등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익배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회사재산 유출을 중심으로 살펴봄
 -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배당으로 소득 처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 보고서는 제I장의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우리나라 회사법과 세법 규정을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조사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회사법과 세법 규정을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국 간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회사법과 세법상 과세규정을 비교하고, 준비금 감액배당과 관련된 현행 우리나라 규정의 개선점을 모색함

14) 회사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여러 가지 법률의 형태(예를 들어 독일은 회사의 상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은 「상법(HGB)」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각각 「주식법(AktG)」과 「유한회사법(GmbHG)」에서 규정함)로 존재하는데, 본문에서는 「회사법」으로 총칭하여 사용하고 관련 내용의 출처를 위해 조사국별 법률의 명칭을 기재함

II. 우리나라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1. 회사법

-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의 유출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 자본감소나 잔여재산분배, 주주와의 계약(거래)을 통한 회사재산 유출 등이 있음¹⁵⁾
 - 자기주식 취득과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익의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가능이익을 분배 재원으로 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되며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자본감소, 잔여재산분배 등은 자본금 및 준비금의 재원규제를 받으며,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함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한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배당가능 이익으로 포섭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외부로 유출할 수 있음

〈표 II-1〉 주주의 회사재산 유출의 유형 및 통제 방법

회사재산의 유출 유형	통제 방법		
	분배 재원	채권자보호절차 ⁶⁾ 등 필요 여부	결의방법
이익의 배당 (준비금 감액배당) ¹⁾	배당가능이익	불필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결의 가능 ⁴⁾)
자기주식 취득 ²⁾			종류주주총회 결의
상환주식상환 ³⁾			
자본감소·잔여재산분배 등 ⁵⁾	자본금·준비금	필요	주주총회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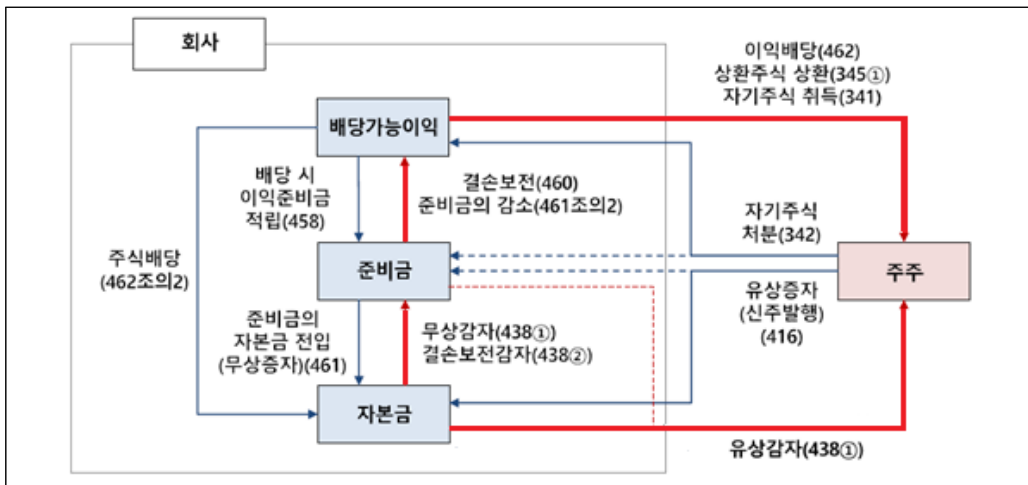
15) 본문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재원규제를 받는 이익의 배당 등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봄

〈표 II-1〉의 계속

- 주: 1) 「상법」 제462조 내지 제462조의4;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 현물배당 및 주식배당을 포함하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법정준비금 감소를 통한 배당(준비금 감액배당)을 포함함
 2) 「상법」 제341조
 3) 「상법」 제345조
 4)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
 5) 「상법」 제438조(자본감소); 제538조(잔여재산분배)
 6) 「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자본감소); 제535조(잔여재산분배)
 자료: 정준혁, 2018, p. 200, 〈표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회사재산 유출 방법과 순자산 계정 간의 이동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과 같음

[그림 II-1]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방법 및 순자산 계정 간 이동



- 주: 1. 회계기준상 자본조정 항목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자본조정 항목의 증가/감소는 각각 순자산의 감소/증가로 이어지므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단순화함
 2.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자본조정 항목이 증가(순자산 감소), 처분 시에는 자본조정 항목이 감소(순자산 증가)하므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함
 3. () 안은 「상법」 조문을 의미함
 자료: 정준혁, 「2011년 개정 상법이 배당실무에 미친 영향」, 『상사법연구』, 제37권 제2호, 2018, p. 203.

가. 이익배당 등

1) 이익의 배당

- 현행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함¹⁶⁾
 -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가능하며,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함¹⁷⁾
- 이익의 배당에는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모두 포함됨
 -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정기배당 외에도 중간배당¹⁸⁾을 할 수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분기배당¹⁹⁾도 가능함
 - 현물배당은 정관에 금전 외의 기타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함²⁰⁾
 - 현행 「상법」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나(이익배당설), 주식분할로 보는 견해(주식분할설)도 있음
 - (이익배당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함(통설)²¹⁾²²⁾
 - (주식분할설) 회사재산의 변동, 즉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분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함²³⁾

16) 「상법」 제462조; 김춘, 2004, p. 75.

17) 「상법」 제464조

18) 「상법」 제462조의3; 주식회사로서 정관의 규정으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영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의 말일에 이사회결의로써 금전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

20) 「상법」 제462조의4;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전배당 외의 현물배당 또한 가능하게 됨

21) 김춘, 2012, p. 53; 김종근·박훈, 2016, p. 208.

22) 회사는 배당금 지급으로 감소될 재산이 주식배당으로 인해 그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환수되므로 이익배당의 실질이 발견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주주는 이익배당결의에 의해 배당금지청구권을 취득하고, 이것이 주식발행으로 이어지므로 배당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

- 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²⁴⁾
 - 현물배당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 주식배당의 경우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음

- 현물배당 시 배당가능한 현물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자기주식의 현물배당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함
 - (긍정설)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에 대한 「상법」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현물배당과 주식 배당은 그 요건이 다르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한 현물 재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은 가능한 것으로 봄²⁵⁾²⁶⁾
 - (부정설) 「상법」에 따른 주식배당은 신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삭제되지 않는 한 자기주식을 현물로 배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²⁷⁾
 - 다만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의 경우 본래의 이익배당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²⁸⁾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²⁹⁾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³⁰⁾
 - 상장법인이라도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여 주식배당을 할 수 없음

23) 김춘, 2012, p. 53.

24) 「상법」 제458조

25) 이영철, 2014, pp. 206~207.

26) 배당으로 하는 현물은 가분적이어야 하며 평가가 용이한 타 회사 주식, 사채 등으로써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발행한 사채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 또한 배당가능한 현물로 볼 수 있음(한국상장사협의회, 2011, p. 58)

27) 최준선, 2012, p. 237.

28) 이영철, 2014, p. 208.

29)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30)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액면금액)으로 하며,³¹⁾ 무액면 주식의 주식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함
 - (긍정설) 무액면주식³²⁾의 발행가액을 정하여 액면주식의 권면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보아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고 봄³³⁾
 - (부정설) 주식배당은 액면주식제도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무액면주식을 채택한 회사는 주식배당을 할 수 없다고 봄³⁴⁾

2) 이익배당 외 회사재산 유출

- (자기주식 취득)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며,³⁵⁾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음³⁶⁾
-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모든 법인이 그 목적에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됨³⁷⁾
 -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의 환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

31) 「상법」 제462조의2 제2항

32) 「상법」 제329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2011년 4월 24일 「상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15일부터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함.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만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였음

33) 권기범, 2013, p. 45; 단지 무액면주식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주식배당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고, 무액면주식의 주식배당 역시 액면주식의 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하는 것이므로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도 주식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4) 한국상장사협의회, 2011, p. 59.

35) 김춘, 2012, p. 11.

36) 「상법」 제341조; 이익배당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총 결의가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가능하도록 함. 이에 따라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반환되는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이 통일적인 재원과 절차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제가 정비됨(김춘, 2012, p. 2)

37)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주권상장법인만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정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음. 또한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의 환급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

- 그래서 개정 전에는 주권상장법인만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정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음
-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함³⁸⁾
 - 시세가 있는 주식(예: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를 통하여 직접 취득할 수 있음
 - 균등한 조건이란 상환종류주식 외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주들에게 공고·통지하거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함³⁹⁾⁴⁰⁾
-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함⁴¹⁾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상환주식의 상환) 「상법」상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익은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함⁴²⁾
 - 상환주식은 정관에 규정을 두어 발행하는 종류주식으로 주식발행 시부터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이익으로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을 의미함⁴³⁾

38) 「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9)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40)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써 자기주식 취득 및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내용과 그 산정 방법, 총액 등을 정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41) 「상법」 제341조의2

42) 심영, 2014, pp. 46~47;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회사가 주주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익으로써 소각함을 규정하고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의 상환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두 경우 모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43) 「상법」 제345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유형은 회사의 상환청구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회사상환주식)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주주상환주식) 두 가지임
- 이익으로서 소각한다는 것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로서 현금,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3) 준비금 감액배당

- ‘준비금 감액배당’이란 법정준비금 감소제도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증액한 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익배당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함
 - 준비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음⁴⁴⁾
 - 법정준비금이란 「상법」상 이익준비금⁴⁵⁾과 자본준비금⁴⁶⁾의 합계이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감소할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음
-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는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을 감소시켜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함으로써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2011년 「상법」 개정⁴⁷⁾으로 제461조의2 규정의 신설에 따라 도입됨
 - 개정 전 「상법」에 의하면 법정준비금에 계상된 자금은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증자⁴⁸⁾나 결손보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할 수 없었음⁴⁹⁾

44) 정준혁, 2018, p. 218.

45) 「상법」 제458조

46) 「상법」 제459조

47) 우리나라는 2011. 4. 14. 「상법」의 회사편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법률 제10600호, 2012. 4. 15. 이후 시행),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규정의 정비, 배당제도 개선, 준비금제도 개선, 법정준비금 감소제도, 이익소각제도 폐지 및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였음(정준혁, 2018, p. 197)

48) 「상법」 제461조

49) 「상법」 제460조

- 준비금 감액배당은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정준비금 감소에 대한 결의가 있는 차기 연도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⁵⁰⁾
- 당초에는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즉시 배당가능설)⁵¹⁾
- 그러나 2018년 3월 30일 법무부는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고, 동일 주총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결의를 하는 것은 「상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함(즉시 배당불가설)⁵²⁾
 - 「상법」에 의하면 차기 연도의 배당재원은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정기주총 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즉 준비금 감소를 한 주총과 동일한 주총의 이익배당결의 시,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분배재원규제(배당가능이익)

- 「상법」은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상환주식 상환이라는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행위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⁵³⁾
- 회계기준에 따른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이익배당 등을 할 수 없음
 - 중간배당의 경우,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더라도 당해 결산기의 배당 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⁵⁴⁾

50) 정준혁, 2018, p. 224.

51) 법무부 유권해석 상사법무과-2089, 2013. 6. 26.

52) 『법률신문』,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18. 3. 3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679>, 검색일자: 2021. 5. 31.

53) 심영, 2014, pp. 44~45.

54) 「상법」 제462조의3 제3항

- 배당가능이익은 자본금, 준비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내 유보하는 현금의 개념이 아니며,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한도를 제한하는 개념임

- (배당가능이익 산정)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⁵⁵⁾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함⁵⁶⁾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법정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⁵⁷⁾
 -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외화환산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등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자본)에 반영되는 것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이 있음

-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통하여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감소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해당 준비금 감소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함⁵⁸⁾
 -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에는 본래 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인 이익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이 혼재하게 됨

55)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상법」에 규정되어 있던 회계규칙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회사의 회계는 「상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함(「상법」 446조의2).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사용하는 순자산 금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에 기초함

56) 「상법」 제462조 제1항

57)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기 위함(심영, 2014, p. 5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되어 자본에 직접 반영된 부분을 포함함. 이하 본문의 내용은 편의상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함

58) 김종근, 2016, p. 184.

〈표 II-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

상법	회계기준
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¹⁾	
(-) 자본금	(-) 자본금
(-) 해당 결산기까지의 자본준비금 ²⁾	(-) 자본잉여금
(-) 해당 결산기까지의 이익준비금 ³⁾	(-)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손익 ⁴⁾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미실현이익 (예: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미실현이익 ¹⁾ (예: 외화환산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등)
(-)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³⁾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배당가능이익	

주: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을 의미함
 2) 「상법」 제459조
 3) 「상법」 제458조(2012. 4. 15.가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은 제외함)
 4) 「상법」 제462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9조
 자료: 정준혁, 2018, pp. 208~209.

2. 세법

가. 과세개요

- 일반적으로 주식발행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음⁵⁹⁾
 -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⁶⁰⁾

59)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60)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라고 표현하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 또는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익(2022. 12. 31. 이전의 것)
 - 위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위 열거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등
- 법인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법인 주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함
- 「소득세법」상 열거된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봄⁶¹⁾ - 「법인세법」에서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⁶²⁾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함⁶³⁾
- 이하 본문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배당소득 중에서 ‘이익의 배당’과 ‘의제배당’을 중심으로 살펴봄

1) 이익의 배당

있으나,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배당은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위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또한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의미함(김종근, 2016, p. 50)

61)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

62) 주주 또는 출자자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하면 법인의 순자산은 증가하나 이에 대해 과세를 하면 결국 동액만큼 자본이 유출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63)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에 열거된 배당소득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주 등이 회사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을 말함⁶⁴⁾
 - 법정준비금의 감소를 통한 배당(준비금 감액배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법」상 배당 절차에 따른 배당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배당 간에는 세법상 취급에 차이가 발생함 - 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3) 준비금 감액배당'에서 설명함
- (현물배당) 금전이 아닌 기타의 자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현물배당을 한 주식발행법인은 배당으로 지급하는 자산의 시가상당액과 배당결의 시점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주식배당) 금전배당 대신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배당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배당소득으로 봄

2) 의제배당

- 「상법」상 절차에 따른 이익의 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잉여금이 특정한 유형으로 주주에게 귀속됨으로써 이익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세법상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⁶⁵⁾ 본문에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소각(상환주식 상환)에 의한 의제배당을 주로 살펴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의 불균등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64) 김종근, 2016, p. 50.

65)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 주식소각 또는 감자⁶⁶⁾·해산·합병·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 대상이나,⁶⁷⁾ 자본전입의 재원인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짐
- 자본전입 재원이 되는 잉여금에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 있음

-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 중에서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음(〈표 II-3〉 참조)⁶⁸⁾
- 여기서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으로서 i) 주식발행액면초과액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iii) 감자·합병·분할차익을 의미함⁶⁹⁾
-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으로 재평가세율 3%로 과세된 건물·토지의 재평가차액을 말함

- 그러나 조세정책 목적, 조세회피 방지, 사실상 유보소득,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에 전입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자본잉여금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함(〈표 II-3〉 참조)⁷⁰⁾
- 출자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
- 자기주식 소각이익으로서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에 전입한 금액
 -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은 2002년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함

66)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를 포함함

67)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68)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69)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즉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말함

70)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 적격합병·분할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함에 따른 합병·분할차익 중 자산조정계정 상당액,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승계분, 이익잉여금 승계분
 - 재평가세율 1%로 과세된 토지의 재평가적립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업회계 또는 「상법」상으로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되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 그리고 이익잉여금인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표 II-3〉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재원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여부

자본전입 재원		의제배당 과세 여부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¹⁾	주식발행액면초과액 ²⁾	일반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출자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 ³⁾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⁴⁾		×
	감자차익 ⁵⁾	일반적인 감자차익	×
		자기주식소각익으로서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전입분 ⁶⁾	○
	합병·분할차익 ⁷⁾	적격합병·분할 시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승계가액 등 ⁸⁾	○
		기타	×
	재평가적립금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	×
		재평가세율 1%로 과세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분	○
	기타자본잉여금(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표 II-3〉의 계속

- 주: 1) 「상법」 제459조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8조; 「법인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4)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5)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그 이전에 소각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의만 의제배당으로 봄
 7)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호, 2010. 6. 30. 이전에 합병·분할한 경우 합병·분할 차이 중 자산평가증가분,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승계분, 이익잉여금 승계분의 자본전입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봄. 2010. 7. 1. 이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2012. 2. 2. 이후 자본전입한 경우, 합병·분할차이 중 자산조정계정 상당액,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승계분, 이익잉여금 승계분의 자본전입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봄

자료: 「법인세법 집행기준」 16-0-5

- (무상증자) 세법에서 열거하는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전입 재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대상 의제배당금액으로 함⁷¹⁾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주금의 납입 없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짐

나) 주식소각(상환주식 상환)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라 주주 등이 교부받는 금전 등의 대가가 해당 주식 등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함⁷²⁾
 □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주주의 당초 납입금액을

71)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무액면 주식의 경우 자본전입액을 발행한 무상주의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7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초과하여 소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과세함⁷³⁾
- 즉 자본의 환급 및 잉여금의 처분에 있어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상 손금이 아니며,⁷⁴⁾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이 되는 것임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봄⁷⁵⁾

3) 준비금 감액배당

- 「상법」상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감소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상법」상 배당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지급하는 준비금 감액배당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에 해당함⁷⁶⁾
- 그러나 세법상 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표 II-3〉 참조)⁷⁷⁾
 - 「상법」 개정 이전에는 「상법」상 이익배당은 모두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으나, 2011년 법정준비금 감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상법」상 이익배당이라도 세법상 배당소득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⁷⁸⁾
- 한편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통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재원의 선택에 대해 과세당국은 회사의 사적자치를 우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⁷⁹⁾

73) 법인 46012-2019, 1993. 7. 8.; 서이 46017-10416, 2002. 3. 7.

74)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75)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 원천세과-2385, 2008. 10. 30.

76) 「상법」 제461조의2

77)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78) 김종근·박훈, 2016, pp. 208~209.

7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 7. 12.

- 자본준비금과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이 모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금액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⁸⁰⁾
 - 이익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이 발생한 순서와 상관없이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먼저 배당하기로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⁸¹⁾
- 그리고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 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⁸²⁾
- 예시 (1) 주식의 취득가액이 1천원이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수령한 배당금이 800원인 경우 세법상 취급은 다음과 같음
 - (배당금 수령시점) 과세소득은 없으며, 수령 후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200원 (=1천 - 800)으로 조정하여야 함
 - (주식 양도시점) 양도가액을 2천원으로 가정하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1,800원이 됨
 - 주식 양도소득 1,800 = 2천(양도가액) - {1천(최초취득원가) - 800(배당금 상당액)}
 - 예시 (2) 앞의 예시 (1)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이 1,500원인 경우 세법상 취급은 다음과 같음
 - (배당금 수령시점) 과세소득은 없으며, 수령 후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영(0)(=min(1천 - 1,500), 0)으로 조정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500원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주식 양도시점) 양도가액을 2천원으로 가정하면,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2천원이 됨

8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 7. 12.

81) 과거 국세청이 「상법」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해당 예규는 2019. 10. 기준으로 삭제되어 유효하지 않음(서면법령법인-2052, 2016. 1. 28.)

8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2018. 6. 22.

- 주식 양도소득 2천 = 2천(양도가액) - {1천(최초취득원가) - 1천(배당금 상당액)}

〈표 II-4〉 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무처리 관련 유권해석

문서번호	내용
서면법령법인-2052, 2016. 1. 28. (2019. 10.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2018.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및 장부가액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주: 1. 서면-2016-소득-6178, 2017. 1. 16., 서면-2016-법인-4413, 2016. 9. 1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 7. 23. 외 다수
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2018. 6. 29.
자료: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따른 배당금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됨을 알 수 있음
 - 배당금 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감소시키므로, 감소된 취득가액만큼이 추후 주식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증가시키거나,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청산 시 의제배당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세될 수 있음
 -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영(0) 미만으로는 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초과한 배당금 상당액은 과세에서 제외됨

4) 자기주식 취득

-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매매 목적인지 소각 목적인지에 따라 주주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달라짐⁸³⁾
 -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은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것이며, 주주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소득이 결정됨
- 매매 목적으로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그 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주주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하거나 보유 후 처분하는 등 그 취득의 목적을 단순한 주식매매로 볼 수 있는 경우, 주주의 관련 주식 처분에 따른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봄⁸⁴⁾

83) 여기서 취득 목적의 판단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행위, 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적인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함(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84) 법규재산 2014-456, 2014. 10. 15.

- 소각 목적으로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차이를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
 - 소각 목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정하는 경우를 말함
 - 다만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정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 이후 보유하다가 소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⁸⁵⁾

나. 주주 과세

1) 개인 주주

- (배당소득) 개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배당소득인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되고,⁸⁶⁾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됨
 -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이고, 종합소득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6~45%(지방소득세 0.6~4.5% 별도)까지 총 8단계 초과누진 세율임⁸⁷⁾
 - (금융소득 비교과세)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 원천징수 수준 이상의 세부담을 과세함⁸⁸⁾

85)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86) 「소득세법」 제14조③ 제6호

87)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음(「소득세법」 제55조)

(단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0억원 초과	45

88) 「소득세법」 제62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해, 이중과세 경감목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한(Gross-up) 후 해당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하며,⁸⁹⁾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처리함
 - 배당가산액은 Gross-up 대상 배당액⁹⁰⁾ 중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가산율 11%를 곱한 금액으로 함⁹¹⁾
 - 자본준비금 또는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은 Gross-up 대상 배당에 포함되지 않음
 - 배당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⁹²⁾

- (양도소득) 개인 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대주주 및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⁹³⁾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양도손익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개별법)⁹⁴⁾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선입선출)⁹⁵⁾
 -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연간 250만원의 필요경비 성격의 기본공제를 허용함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⁹⁶⁾ 여부·상장주식 여부·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10~30%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89) 「소득세법」 제56조

90) Gross-up 대상 배당액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②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

91)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92) 「소득세법 집행기준」 56-116의 2-1

93) 소액주주가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협회장회시장, 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하지 않음

9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9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96) 대주주란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2020. 4. 1. 이후 적용)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비과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10%, 장외거래 및 비상장기업 주식(중소기업제외)은 20%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은 30%

-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되므로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전면 과세할 예정임
 - 양도손익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좌별로 평가함⁹⁷⁾
 -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연간 기본공제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경우 5천만원, 그 외 기타금융투자상품의 경우 250만원을 적용함⁹⁸⁾
 - 금융투자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함⁹⁹⁾

2) 법인 주주

- (배당소득) 법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상장 여부, 지분율 등에 따라 30%, 50%, 100%의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음¹⁰⁰⁾
 -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세무상 의제배당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해야 하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이 필요함

9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3(2021. 2. 17. 신설)

98) 국내상장주식 등이란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K-OTC) 및 공모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를 말하며, 기타금융투자상품이란 그 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을 말함

99) 국내 상장주식 등의 경우 연간 5천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함

100)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양도소득) 주식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손익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당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 양도손익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함¹⁰¹⁾

다.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처리

1) 세법상 분배재원 등의 관리

- 우리나라는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현행 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잉여금을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분배 재원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임(〈표 II-3〉 참고)

가) 원천징수 신고의무 등

- 개인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배당의 지급 형태(현금현물주식배당)에 관계없이 세법상 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에 해당하면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함
 - 현금배당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함
 - 현물배당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당해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별도로 현금 징수하여야 함
 -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배당소득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¹⁰²⁾

101)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75조 제2항)

- 개인 주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¹⁰³⁾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배당소득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¹⁰⁴⁾

- 주식발행법인이 법인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주주에 대한 준비금 감액배당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발행법인에 관련 정보제공 의무 또는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음

102) 「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103)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04)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함 (동조 제2항)

Ⅲ. 주요국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1. 미국

가. 회사법

1) 재산의 분배

- 미국에서는 회사재산 분배와 관련된 제도를 각 주(州) 「회사법」에서 규제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정자본제도(stated capital)를 유지하는 주 「회사법」(전통적 입법 모델)과 이를 폐지한 주 「회사법」(현대적 입법 모델)으로 구분됨¹⁰⁵⁾
 - 전통적 입법 모델을 채택한 대표적인 주 「회사법」은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뉴욕주 회사법」을 들 수 있으며, 현대적 입법 모델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과 1984년 「개정모범 사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RMBCA)」이 있음
 - 과반수의 주 「회사법」이 현대적 입법 유형에 해당되며, 미국 상장회사 과반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채택함

- 현대적 입법 모델은 회사재산의 유출을 분배라는 개념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전통적 입법 모델은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 개별적으로 규제함¹⁰⁶⁾
 - 전자는 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 등을 분배라는 개념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대표적인 주 「회사법」으로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과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이 있음

105) 최준선 외 6인, 2009, p. 6.

106) 김춘, 2012, p. 68.

- 후자는 법정자본제도의 개념에 기초하여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을 개별적으로 규제 하는데,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뉴욕주 회사법」이 대표적임
- 재산의 분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고 연도 중 언제든지 중간 결산에 기초하여 분배가 가능함¹⁰⁷⁾
- 분배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가능하여 유형자산, 유가증권,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한 분배도 허용됨
 -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르면 현금, 재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음¹⁰⁸⁾
 -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에 따르면 분배는 현금, 회사의 부채 또는 주식에 대한 회사의 여타 재산의 양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익배당, 주식의 매입, 상환 또는 취득, 부채의 분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¹⁰⁹⁾
- (자기주식 취득/주식상환)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상환과 관련된 전통적 입법 모델과 현대적 입법 모델 규정을 살펴봄¹¹⁰⁾
 - 전통적 입법 모델에서는 잉여금이 없더라도 자본금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며, 상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소각한 주식수에 대응하는 자본금이 감소함
 -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함¹¹¹⁾
 - 현대적 입법 모델에 의하면 자기주식 취득이나 주식상환 등을 주주에 대한 분배로 취급하므로 이익배당과 동일한 분배제한규제가 적용됨
 - 상환된 자기주식은 자동적으로 소각되므로 금고주나 자기주식의 소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107) 김춘, 2012, p. 68.

108) Del. Code Ann. tit. 8, §173

109) RMBCA §1.40(6)

110) 김춘, 2012, pp. 71~72.

111) Del. Code Ann. tit. 8, §243(c)

- (주식배당) 전통적 입법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배당으로 보고 있지만, 현대적 입법 모델을 채택한 경우에는 배당의 범주에서 제외함
 - 액면제도와 법정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회사법」의 경우 주식배당은 잉여금을 자본금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더라도 액면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고 봄
 - 반면 주식분할은 단순한 액면의 분할이며 잉여금의 이전은 없음
 - 액면제도와 법정자본제도를 폐지한 RMBCA와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의 경우에는 주식 배당과 주식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식분할로 동일하게 처리됨
 - 주식배당은 대가 지불이 없는 주식의 발행이므로 분배의 개념에서도 제외됨

2) 분배재원규제

- 미국 주 「회사법」은 채권자 보호와 주주보호원칙에 입각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제한하며 회사에 지급불능상태를 초래하는 이익배당을 규제함¹¹²⁾
- 분배재원을 규제하는 기준은 법정자본제도에 기초한 전통적 입법 모델과 이를 폐지한 현대적 입법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음¹¹³⁾
 - 전통적 입법 모델을 채택한 「회사법」의 경우 잉여금기준과 잉여금 또는 당기순이익 기준이 있음
 - 잉여금 기준(balance sheet surplus test): 순자산액이 법정자본금(stated capital)¹¹⁴⁾을 초과하는 금액, 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에서 채택함

112) 한상범 외 3인, 2002, p. 45.

113) 최준선 외 6인, 2009, pp. 7~8; 김춘, 2012, pp. 69~70.

114) 법정자본금은 ① 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 합계 ②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 발행가액 중 법에 의해 자본잉여금으로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합계 ③ 기타 주식배당 등을 통해 자본금으로 전입된 금액 중 감자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합계를 합한 금액임(김춘, 2012, p. 69, 각주 194))

- 잉여금 또는 당기순이익 기준(surplus or net profit test): 전기 이월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기 순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며, 대표적으로 델라웨어주와 뉴욕주에서 채택함¹¹⁵⁾
- 현대적 입법 모델을 채택한 「회사법」의 경우 순자산 기준과 유보이익 및 재무비율 기준이 있음
 - 순자산 기준(net asset test): 분배 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양(+)의 값으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분배가 가능하며, 「개정모델사업회사법(RMBCA)」과 미국 과반수 주 「회사법」에서 채택함
 - 유보이익 및 재무비율 기준(retained earnings or asset-liabilities ratio test): 유보이익이 있거나 또는 유보이익이 부족한 경우라도 분배 이후 일정 재무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분배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채택함
- 그리고 실질지불불능 기준(equitable insolvency test)이나 이와 유사한 기준을 미국 모든 주 「회사법」에서 채택하고 있음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지급기한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 회사가 지불불능상태이거나, 분배를 함으로써 지불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 분배가 금지됨

나. 세법

1) 과세개요

- 미국 세법은 「회사법」에 따른 분배 재원과는 관련없이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s and profit, E&P)을 기준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분배금의 과세 여부를 결정함

115) 델라웨어주 외 채택한 주는 Arizona, Kansas, Louisiana, Maine, Nevada, New Hampshire, Oklahoma, Rhode Island, Vermont가 있음(김춘, 2012, p. 105)

- 세무상 E&P의 범위 내에서 회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이익분배(profit distribution)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¹¹⁶⁾
 - 재산(property)은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의미하지만,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함¹¹⁷⁾
 - 분배가 현금 외 재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은 공정시장 가액(fair market value, 시가)으로 평가됨¹¹⁸⁾
 -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은 현물 분배와 관련된 처분소득을 인식하여야 함¹¹⁹⁾

- 세무상 E&P를 초과하는 분배금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의 환급으로 처리되고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stock basis)에서 차감됨¹²⁰⁾
 - 그리고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과세됨¹²¹⁾

- (자기주식 취득/주식 상환 stock redemption) 주식발행법인이 재산의 교환으로 주주로 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상환으로 취급함¹²²⁾
 - 주식상환은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 주식매매로 처리되거나 또는 주주에 대한 주식발행법인의 재산 분배로 처리될 수 있음
 - 주식상환으로 인해 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주식 매매로 처리됨¹²³⁾

116) §301(c)(1), §61(a)(7)

117) §317(a)

118) §301(b)(1)

119) §311(b)(1). 그러나 재산 분배와 관련된 손실은 인식하지 않음(§311(a))

120) §301(c)(2)

121) §301(c)(3)(A)

122) §317(b). 취득한 주식의 폐기, 소각, 자기주식 보관 여부에 관계없음

123) Section 제302조 (b)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면 주식상환은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화가 있다고 보고 주주매매로 처리됨

- 본질적으로 배당과 다른 상황(Section 302(b)(1)): 상환으로 지배력에 의미 있는 감소가 있는 경우로 상환 이후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 현저히 불균등한 상황(Section 302(b)(2)): 상환 이후 주주의 잔존 주식이 상환 직전 주주 지분율의 80%보다 적고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50% 미만인 경우인 경우를 의미함

- 주주권의 완전 종료(Section 302(b)(3)): 상환계획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모든 주식이 완전히 상환

- 그 외 주식상환은 회사재산 분배¹²⁴⁾로 보고 Section 301 규정에 따라 배당, 출자자본 환급, 양도소득으로 처리됨
- 그리고 상속재산인 주식의 주식 상환이 상속재산의 35%를 초과하는 경우¹²⁵⁾ 상환 대가는 상속세 납부액을 한도로 주식 양도가액으로 봄¹²⁶⁾
- (주식배당 stock dividend)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은 분배가능한 회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음¹²⁷⁾
 -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배당은 Section 제301조가 적용되는 재산 분배로 처리됨¹²⁸⁾
 - 주주가 분배 재산을 자기주식 또는 재산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분배로 인해 일부 주주는 재산을 수령하고 다른 주주의 재산이나 E&P에 대한 비례적인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 분배로 인해 일부 보통주는 우선주를 수령하고 다른 보통주는 보통주를 수령하는 경우
 - 전환 주식이 전환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식배당 또는 주식분할만을 고려하여 전환우선주의 전환비율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주식 분배가 우선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주주가 불균형 분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통주에 대한 전환우선주의 분배가 있는 경우
 - 그리고 전환비율이나 상환가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 회사재산이나 E&P에 대해 지분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주주에 대해 Section 제301조가 적용될 수 있음¹²⁹⁾

된 경우를 의미하며 다만 주주가 소유한 주식이 다 상환되었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경우에는 완전 종료에 해당되지 않음(Section 318)

- 사업의 일부 청산(Section 302(b)(4)): 영업 중인 사업부문의 청산을 위한 주식상환은 개인 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로 봄(이창희, 2018, p. 161)

- 투명체로 취급되는 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등에 의한 상환(Section 302(b)(5))

124) §302(d)

125) §303

126) §303; 이창희, 2018, p. 163.

127) §305(a). 주식배당이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상 E&P는 변화가 없으며, §307에 따라 구주의 순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주식배당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장부가액을 정함

128) §305(b)

2) 주주 과세

- 「내국세법」 Section 제301조 (c)항에 따라 주주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출자 자본의 환급,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처리됨¹³⁰⁾
 -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상 E&P가 해당 연도에 이루어진 모든 분배금의 재원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 해당 분배금 전액은 과세대상 배당으로 처리됨
 - 분배금이 세무상 E&P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원가에서 충당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 주식매매로 보지 않는 주식 상황¹³¹⁾과 과세대상 주식배당¹³²⁾은 Section 제301조 (c)항에 따라 배당, 출자자본의 환급, 양도차익으로 구분됨

가) 개인 주주

(1) 배당소득

- 미국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은 주식발행법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세무상 E&P를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재산 분배(any distribution of property)로 정의됨¹³³⁾
 - 현금 외 현물 재산으로 수령하는 분배의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 취득가액과 배당 소득은 시가로 산정됨¹³⁴⁾

129) §305(c)

130) 이창희(2018, p. 86)에서는 주식발행법인에서 수령한 금액을 배당소득, 투자원본 회수, 양도차익의 3분법으로 설명함

131)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상황을 규정한 Section 제302조(b)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상황으로 각주 18)을 참조

132) §305(b)에 따른 주식배당

133) §316(a)

134) §301(b)(1)

- 통상적으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연방 소득세율로 과세됨
- (적격 배당소득) 개인 납세자가 수령하는 적격 배당소득(qualified dividend income)에 대해 연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아닌 순자본소득(net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저율의 자본소득세율¹³⁵⁾을 적용함
 - 적격 배당소득은 세무신고 유형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됨¹³⁶⁾
 - 10% 또는 15%로 과세되는 금액: 0%
 - 15% 초과 37%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금액: 15%
 - 37%의 세율로 과세되는 금액: 20%
 - 적격 배당소득은 과세연도 중에 내국법인 또는 적격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으로¹³⁷⁾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 60일 전부터 기산하여 121일 동안 60일 이상 보유하여야 함¹³⁸⁾

135) §1(h)(11). 개인 주주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 신설 도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도입 당시 2012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2012 미국 납세자 구제법(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2012)」에 의해 영구적으로 법제화됨(Bloomberglaw, “Portfolio 764-4th: Dividends — Cash and Property,” <http://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2472175144>, 검색일자: 2021. 6. 16.)

136) IRS, 2021, p. 19.

137) §1(h)(11)(B)(i). 한편 조세감면단체 또는 면세인 농업인협동조합(formers' cooperative)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상호저축은행에 의해 지급된 배당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 고용주 증권(employer securities)을 기초로 지급된 공제가능한 배당, 투자이자를 공제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투자소득으로 처리하는 배당은 포함하지 않음(§1(h)(11)(B)(ii), §1(h)(11)(D)(i))

138) §§1(h)(11)(B)(iii)(I), 1(h)(11)(B)(iii)(III)

〈표 III-1〉 세무신고 유형과 과세표준별 연방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2021년)

(단위: %)

구분	세무신고 유형			연방 소득세율 ¹⁾	자본 소득세율
	단독신고	부부합산	세대주신고		
소득세 과세표준	~ \$9,950	~\$19,900	~\$14,200	10	0
	\$9,951 ~ \$40,525	\$19,901~\$81,050	\$14,201~\$54,200	12	
	\$40,526~\$86,375	\$81,051~\$172,750	\$54,201~\$86,350	22	15
	\$86,376~\$164,925	\$172,751~\$329,850	\$86,351~\$164,900	24	
	\$164,926~\$209,425	\$329,851~\$418,850	\$164,901~\$209,400	32	
	\$209,426~\$523,600	\$418,851~\$628,300	\$209,401~\$523,600	35	
	\$523,601~	\$628,301~	\$523,601~	37	

주: 1) 연방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37%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이며, 세무 신고 유형(미혼과 기혼, 세대주 여부)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을 달리함

자료: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1,"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1>, 검색일자: 2021. 6. 17.; Tax Found, "2021 Tax Brackets," <https://taxfoundation.org/publications/federal-tax-rates-and-tax-brackets/#brackets>, 검색일자: 2021. 6. 17.

- (순투자소득세) 개인 납세자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목적상 순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3.8%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됨¹³⁹⁾
- i) 순투자소득 또는 ii) 수정된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서 과세최저한도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3.8%가 부과됨
- 순투자소득은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배당, 이자, 연금,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등을 포괄함
 - 과세최저한도기준금액은 i) 부부합산신고 25만달러 ii) 부부개별신고 12만 5천달러 iii) 기타 20만달러임¹⁴⁰⁾

139) §1411(a)(1)

140) §1411(b)

(2) 양도소득과 자본 환급

- 세무상 당해 연도 또는 누적된 E&P를 초과하는 주식발행법인의 분배(비배당 분배금)는 과세대상 배당이 아닌 주주 출자의 반환(자본 환급)으로 처리됨¹⁴¹⁾
 - 세무상 E&P를 초과하는 법인의 분배금은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stock basis)이 차감됨
 - 자본 환급으로 보는 분배금을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때는 취득가액 총액이 아닌 개별 주식 취득원가별로 처리함

- 그리고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비배당 분배금은 주식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됨¹⁴²⁾

- 세무상 E&P를 초과하는 분배금에 대해 자본 환급과 양도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살펴봄
 - 개인 주주는 A 기업의 주식을 1949년과 1954년 각각 52%(취득가액 1,040달러), 48%(취득가액 14만 4,500달러)의 지분을 취득함¹⁴³⁾
 - 1963년 개인 주주가 A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 16만 9천달러 중에서 기업의 세무상 E&P를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은 1만 3,565달러임
 - 주식 취득가액 총액 14만 5,540달러에서 초과 분배금 15만 5,435달러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시기별 각각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초과 분배금을 배분, 차감한 후 비과세되는 자본 환급 부분과 양도소득으로 산출함
 - 1949년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7만 9,786달러가 발생하고 1954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141) §301(c)(2)

142) §301(c)(3)(A)

143) *Johnson v. United States*, 435 F.2d 1257(4th Cir. 1971)

〈표 Ⅲ-2〉 초과 분배금의 배분

구분	1949년 취득 주식(52%)	1954년 취득 주식(48%)	합계
세무상 E&P 초과 분배금	\$80,826	\$74,609	\$155,435
자본 환급	(1,040)	(74,609)	(75,649)
양도소득	79,786	0	79,786

자료: *Johnson v. United States*, 435 F.2d 1257 (4th Cir. 1971); Bloomberglaw, “C. Treatment of Nondividend Distributions Under §30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2472177192?bc=W1siRG9jdW1lbnQiLCIvcHJvZHVjdC90YXgvZG9jdW1lbnQvMjI0NzIxNzY-AiXV-8e4a25a8ab66a1adf95ec21078c48eb1d990f94a>, 검색일자: 2021. 6. 18.

□ (주식 상환)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주식 상환은 주식매매로 보고 양도 소득으로 과세됨

- 상환 대가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산함¹⁴⁴⁾
 - 주식 취득원가는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고,¹⁴⁵⁾ 취득가액이 다른 동종 주식인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상환한 것으로 봄¹⁴⁶⁾
- 보유株式이 총발행株式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손실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¹⁴⁷⁾

나) 법인 주주¹⁴⁸⁾

□ (수입배당금 공제) 법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경감을 위해 수입배당금 공제(Dividend receive deduction, DRD)가 허용됨

144) §61(a); §1001

145) Reg. §1.1012-1(c)

146) Reg. §1.302-5(a)(1)

147) §267(a)(1); 이창희, 2018, p. 163.

148)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처리는 개인 주주의 경우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함

- 법인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50%, 65%, 100%의 DRD 공제율이 적용됨¹⁴⁹⁾
 - 다만 50%(또는 6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주의 DRD는 과세소득의 50%(또는 65%)를 초과하지 못함¹⁵⁰⁾
- 다만 법인 주주가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DRD의 적용은 배제됨¹⁵¹⁾
 - 법인세를 내지 않는 단체가 수령하는 배당금
 - 배당락일 전후의 45일 기간 동안 45일 이상 보유하지 않은 단기 보유 주식
- 한편 비정상적 배당에 대해 수입배당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식 취득가액을 공제액만큼 감액하고 주식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함¹⁵²⁾
 - 비정상적 배당이란 주식 취득원가의 일정 비율을 넘는 배당금으로 배당우선주인 경우 5%, 그 외 10%를 넘는 배당을 의미함¹⁵³⁾
 - 다만 2년 이상 보유 주식은 제외함

3) 주식발행법인 세무처리

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s and Profits, E&P)

- 세무상 E&P는 주주의 출자 자본을 반환하지 않고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에 해당함
 - 세무상 E&P 범위 내에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불한 분배금은 배당에 해당되어 주주의 총소득¹⁵⁴⁾을 구성함

149) §243(a), §243(c)

150) §246(b)

151) 이창희, 2018, p. 99.

152) 이창희, 2018, p. 99; §1059

153) §1059(c)

154) §61

- 여기서 배당은 1913년 2월 28일 이후부터 이월되어 누적된 E&P와 당해 과세연도 E&P를 재원으로 하는 회사재산의 분배를 의미함¹⁵⁵⁾
- 세무상 E&P 개념은 1916년 「세법(Revenue Act)」¹⁵⁶⁾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포괄적인 정의는 미국 세법에서 규정된 바 없음¹⁵⁷⁾
- 세무상 E&P는 기업회계 목적의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 또는 유보된 이익(retained earnings)이나 법인세 계산 목적상 과세표준(taxable income)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1) 세무상 E&P의 계산¹⁵⁸⁾

- 주식발행법인의 분배가능한 경제적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세무상 E&P는 이월결손금 차감 전 법인세 과세표준(taxable income before NOI)¹⁵⁹⁾을 출발점으로 하여 특정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됨¹⁶⁰⁾
- 법인세 계산 목적을 위해 주식발행법인이 사용하는 회계방법 및 회계원칙은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세무상 E&P 계산 목적으로 사용됨¹⁶¹⁾
- 예를 들어 현금주의 회계방법을 채택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기업은 E&P 계산 목적을 위해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 회계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¹⁶²⁾

155) § 316

156) Pub. L. No. 64-271.

157) 이창희, 2018, p. 88. 다만 주식발행법인의 분배가능한 경제적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특정 조정 항목을 Section 제312조 및 일부 법원 판례, 행정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158) 다음 본문은 이정미(2016, p. 372) 및 Bloomberglaw, "Portfolio 762-4th: Earnings and Profits, Part I. Calculating E&P,"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10193367592>(검색일자: 2021. 7. 20.)를 참조하여 설명함

159) Reg. §1.312-6. 정확히 말하자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 과세표준(taxable income before NOI)에 해당함

160) §1.312-6

161) Reg. §1.312-6(a)

162) 다만 기업의 할부거래와 관련한 수익의 인식에 있어서 E&P 계산 목적으로는 할부법(the installment method)을 사용할 수 없음(§312(n)(5))

- 세무상 E&P를 계산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차감 또는 가산하는 조정항목을 간략하게 살펴봄
 - 가산 조정항목
 - 비과세 소득(tax exempt income)¹⁶³⁾은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비과세 소득이 실현되거나(또는 수령할 때) E&P에 가산함
 - 수입배당금 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처리된 자회사 수입배당금
 - 생명보험금 수령액(주식발행법인이 수익자인 경우)¹⁶⁴⁾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면세¹⁶⁵⁾ 채권 이자
 - 연방법인세 환급액¹⁶⁶⁾
 - 차감 조정항목
 - 당해 과세연도 결손금(Net operating loss)
 - 법인세 계산 목적상 손금불산입된 특정 항목
 - 생명보험 증권 관련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Section 264(a)(4))
 - 법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
 - 손금불산입된 면세 채권에 대한 감모상각 가능한 채권 프리미엄¹⁶⁷⁾과 면세 채권에 대해 지급된 손금불공제 이자비용
 -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¹⁶⁸⁾
 - 기부금 한도초과액¹⁶⁹⁾
 - 손금불산입된 출장 및 접대비¹⁷⁰⁾
 - 로비 및 정치 비용¹⁷¹⁾

163) 법령에 의해 면세되는 모든 소득,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과세하지 않는 소득 및 Section 제61조 또는 이전 세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총소득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의미함(Reg. §1.312-6(b))

164) §101

165) §103

166) Rev. Rul. 64-146.; Rev. Rul. 75-153.

167) Section 171(a)(2)

168) Section 163(j)와 Section 279. 다만 Section 163(f)에 따라 이자비용은 E&P에서 차감하지 않음

169) Section 170(b)(2)

170) Section 274

- 손금불산입된 연방 법인세¹⁷²⁾과 중간예납액(Estimated Taxes)¹⁷³⁾
- 한도초과한 종업원 보상제도(현금지급분)
- 종업원 등 관련 주식보상제도 관련 비용¹⁷⁴⁾
- 자기주식 취득(stock reacquisition) 관련 금액¹⁷⁵⁾
- 자본이익을 초과하는 자본손실(net capital loss)¹⁷⁶⁾

- 감가상각방법은 세무상 E&P 계산을 위해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으로 재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된 감가상각비와의 차액을 가감함¹⁷⁷⁾
-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E&P 계산 목적에 따른 장부가액을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 E&P에 반영함

(2) 분배 재원의 계산

-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의 분배 재원은 당해 과세연도 E&P, 전기 이월된 E&P, 1913년 3월 1일 기준 세무상 E&P로 구성되고,¹⁷⁸⁾ 이 세 가지의 재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 이루어지는 분배는 자본의 환급으로 고려됨¹⁷⁹⁾
- 당해 과세연도 E&P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이루어진 분배는 E&P 계산에 고려되지 않음¹⁸⁰⁾
 - 과세연도 중 이루어진 분배 재원은 과세연도 종료일에 결정되므로 주주 과세효과 역시 과세연도 종료일에 결정됨

171) Section 162(e); Section 162(c)에 따른 불법적인 뇌물이나 리베이트는 제외함

172) Section 275

173) Rev. Rul. 79-69.

174) Section 83

175)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또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의 취득을 위해 지급하거나 발생한 금액은 Section 162(k)에 따라 손금불공제됨

176) Section 1211(a)에 따르면 자본이익을 초과하는 자본손실은 경상소득과 상계할 수 없음

177) Section 312(k)(1); Reg. §1.312-6(c)

178) Reg. §1.316-2(a)

179) Reg. §1.316-2(a)

180) Section 316(a)

- 그 결과 분배일 현재 시점으로는 해당 분배가 배당인지 또는 자본 환급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 전기 이월된 E&P는 1913년 2월 28일 이후부터 이월되어 누적된 전기 E&P를 의미함
- 1913년 3월 1일까지 누적된 E&P(1913년 3월 1일 기준 E&P)를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
 - 당해 과세연도 E&P와 전기 이월된 E&P가 모두 소진된 이후 1913년 3월 1일 기준 E&P를 재원으로 할 수 있음¹⁸¹⁾

- (당해 과세연도 E&P)분배금) 당해 과세연도 E&P가 충분하여 한 과세연도 중에 이루어진 모든 분배를 충당하는 경우 분배금은 모두 배당으로 처리됨
 - 재원별 분배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 이월된 E&P의 유무는 분배금의 배당 결정 여부와는 무관함¹⁸²⁾
 - 예시 (1)
 - 2020년 초 현재 X기업의 전기 이월 E&P 결손금은 5만달러이고 2020년 종료일 현재 당기 과세연도 E&P는 2만달러인 경우
 - 2020년 중에 이루어진 분배금 1만 2천달러는 당기 과세연도 E&P를 재원으로 한 것으로 처리되어 전액 배당으로 처리됨

- (당해 과세연도 E&P<분배금) 한 과세연도 중에 이루어진 모든 분배금이 당해 과세연도 E&P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도 중에 이루어진 각각의 분배에 비례하여 당해 과세연도 E&P를 배분하여 분배의 재원을 결정해야 함¹⁸³⁾
 - 당해 과세연도 E&P를 비례 배분한 이후, 나머지 분배액에 대해 분배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전기 이월된 E&P를 각각의 분배별로 배분되며 전기 이월된 E&P는 선입선출의 순으로 고려됨¹⁸⁴⁾

181) Reg. §1.316-2(d)

182) 과세연도 말 주식발행법인은 당해 과세연도 E&P가 발생하면, 전기 이월된 E&P 결손금이 있더라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nimble dividend가 세무상 허용됨

183) Reg. §1.316-2(b)

○ 예시 (2)

- 예시 (1)에서 2020년 중 이루어진 분배가 2만 5천달러라면, 해당 분배는 당해 과세연도 E&P 2만달러까지는 배당으로 처리됨
- 분배일 기준 전기 이월 E&P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분배금 5천달러는 자본 환급으로 보고 주식 취득가액에서 상계됨

○ 예시 (3) 2020년 초 전기 이월 E&P는 2만 8천달러이고 2020년 종료일 현재 당기 과세연도 E&P는 4만달러인 X기업이 2020년 중에 2만달러씩 분기별로 분배한 경우(총분배금 8만달러)¹⁸⁵⁾

- 당기 과세연도 E&P는 총분배금(8만달러)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므로 각 분배별로 당기 과세연도 E&P를 비례 배분하여야 하며, 분배 결과 분기별 분배금 2만달러 중에서 당기 과세연도 E&P를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1만달러가 됨(1단계)
- 당기 과세연도 E&P를 초과하는 분배에 대해 전기 이월 E&P를 배분하고, 분기별로 배분된 전기 이월 E&P는 각각 1만달러(1분기), 1만달러(2분기), 8천달러(3분기), 영(0)(4분기)임(2단계)
- 분배금 중 과세대상 배당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6만 8천달러임(〈표 III-3〉 참조)

〈표 III-3〉 분배금이 당해 과세연도 E&P를 초과하는 경우(예시 (3) 참조)

(단위: 달러)

2020년 분배금		당해 과세연도 E&P 비례 배분(①)	전기 이월 E&P 배분(②)	과세대상 배당 (①+②)
1분기	20,000	10,000	10,000	20,000
2분기	20,000	10,000	10,000	20,000
3분기	20,000	10,000	8,000	18,000
4분기	20,000	10,000	0	10,000
합계	80,000	40,000	28,000	68,000

자료: 본문 예시 (3)을 표로 정리함

184) Reg. §1.316-1(b)

185) Reg § 1.316-2(c); Bloomberglaw, "Portfolio 762-4th: Earnings and Profits, XVI. Corporate Distributions with Respect to Stock, B. Sourcing Rules, 1. Distributions Exceed Current Year E&P,"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10193400872>(검색 일자: 2021. 7. 20.)

-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분배에 대한 주주 과세 여부는 분배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전기 이월된 E&P에 따라 정해짐
- 각각 분배별로 분배일 기준 기간별로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을 비례 배분하여 전기 이월된 E&P를 조정한 후 분배의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함¹⁸⁶⁾
- 예시 (4) 2020년 초 전기 이월된 E&P가 4만달러인 X기업은 2020년 7월 1일과 9월 30일에 각각 1만 5천달러, 2만 3천달러를 주주에게 분배함.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해 X기업은 5천달러의 영업 손실(당해 과세연도 E&P 결손금)이 발생함¹⁸⁷⁾
- 7월 1일 분배
- 분배일까지의 일수를 고려하여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금 2,500달러(=5,000 × 180일/360일)를 비례 배분하여 전기 이월된 E&P를 조정함
 -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금 배분액 2,500달러를 고려한 분배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전기 이월된 E&P는 3만 7,500달러이므로 7월 1일 기준 분배금 1만 5천달러는 모두 전기 이월된 E&P를 재원으로 함
- 9월 30일 분배
-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금 배분액 1,250달러(=5,000 × 30일/360일)와 이전 분배금을 고려한 분배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전기 이월된 E&P는 2만 1,250달러¹⁸⁸⁾ 이므로 분배금 2만 3천달러 중 2만 1,250달러는 전기 이월된 E&P를 재원으로 함
 - 계산 결과, 2020년 X기업 분배금 중 과세대상 배당은 3만 6,250달러이며, 나머지 1,750달러는 자본 환급으로 처리됨

186) Reg. §1.316-2(b)

187) Rev. Rul. 74-164, 1974-1 C.B. 74, Situation 4.를 간략하게 소개함

188) 7월 1일자 분배 이후 전기 이월 E&P 2만 2,500달러에서 9월 30일자로 배분된 당해 과세연도 결손금 1,250달러를 차감함

〈표 III-4〉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예시 (4) 참조)

(단위: 달러)

2020년 분배금(①)		당해 과세연도 E&P 결손금 배분	이용 가능한 전기 이월 E&P(②)	과세대상 배당 (=min(①, ②))
7월 1일	15,000	2,500 ¹⁾	37,500 ³⁾	15,000
9월 30일	23,000	1,250 ²⁾	21,250 ⁴⁾	21,250
합계	38,000	-	-	36,250

주: 1) $5,000 \times (180/360) = 2,500$ 2) $5,000 \times (30/360) = 1,250$ 3) 7월 1일자로 배분된 당해 과세연도 결손금을 전기 이월 E&P에서 차감함($40,000 - 2,500$)4) 7월 1일자 분배 이후 전기 이월 E&P($37,500 - 15,000 = 22,500$)에서 9월 30일자로 배분된 당해 과세연도 결손금을 차감함

자료: 본문 예시 (4)를 표로 정리함

(3) 예외 규정

- 조직개편이나 적격 기업분할(spin-off)에 따른 분배, 청산에 따른 분배,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세무상 E&P를 재원으로 하는 분배로 간주하지 않음¹⁸⁹⁾
- 한편 실제로 회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연방 소득세 목적상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상 E&P 계산 시 고려됨

(4) 분배에 따른 세무상 E&P 처리

- 일반적으로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주식발행법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분배된 현금, 부채증권, 분배된 기타 자산의 조정 장부가액¹⁹⁰⁾만큼 세무상 E&P가 감소됨¹⁹¹⁾

189) Reg. §1.316-11(b)

190) 세무상 E&P 계산 목적으로 조정된 장부가액을 의미함

191) §311(a); §312(a)

- E&P는 영(0)을 한도로 감소하므로¹⁹²⁾ 분배를 원인으로 한 E&P 결손은 발생할 수 없음
- (현물배당) 평가대상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평가이익의 인식 이후 자산의 시가만큼 세무상 E&P를 감소시킴¹⁹³⁾
 - 분배 자산의 시가와 세무상 E&P 목적으로 계산된 조정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E&P에 반영함(1단계)¹⁹⁴⁾
 - 다만 분배되는 현물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분배로 인한 손실은 인식하지 않음¹⁹⁵⁾
 - 분배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이나 세무상 E&P¹⁹⁶⁾ 중 적은 금액을 E&P에서 감소함(2단계)¹⁹⁷⁾
 - 예시) 전기 이월된 세무상 E&P 120달러를 보유한 X기업은 비청산 재산 분배를 주주에게 함. 분배대상 자산의 시가 150달러, 세무상 E&P 목적으로 조정된 장부가액 100달러임
 - 분배 재산의 시가와 조정 장부가액 차액인 50달러를 세무상 E&P에 가산함
 - 분배 재산의 시가인 150달러를 E&P에서 차감하여 E&P 잔액은 20달러가 됨
 - E&P를 재원으로 하는 150달러 전액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리됨
- (주식상환) 주식매매로 처리되거나 분배로 처리되는 주식상환 모두 세무상 E&P를 감소함
 - 주식매매로 보는 주식상환은 그 상환대가를 분배로 보고 세무상 E&P를 감소함
 - 다만 '누적 E&P 가운데 상환주식에 귀속되는 부분'을 한도로 함¹⁹⁸⁾

192) §312(a)

193) §312(b)(1)(2)(3)

194) §312(b)(1)

195) §311(a)

196) 앞서 재산의 시가와 조정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영한 후 E&P를 의미함

197) §312(b)(2)

198) §312(n)(7)

- 그러하지 않고 Section 301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배로 처리되는 경우 현금이나 재산 시가만큼 감소함
- (주식배당) 주식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¹⁹⁹⁾ 주식 배당은 세무상 E&P를 감소시키지 않음²⁰⁰⁾
 - 나) 원천징수 신고의무 등
 - 금전 또는 기타 재산 가치가 10달러 이상인 회사재산 분배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은 해당 내용을 IRS에 신고하여야 함²⁰¹⁾
 - 다음해 2월 28일(전자신고 3월 31일까지) Form 1099-DIV(Dividends and Distributions)를 IRS에 제출하여야 함²⁰²⁾
 - 그리고 분배금을 수령한 주주에게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1099-DIV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함²⁰³⁾
 - 한편 비과세되는 분배(nontaxable distribution)를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발행법인은 해당 내용을 IRS에 신고하여야 함
 - 비과세 분배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 이후 종료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

199)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발행법인이 분배하는 주식은 주주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Section 305(a))

200) 그러나 전환사채의 전환 비율이 증가하여 의제배당(deemed distribution)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Section 305(b)(2))와 특정 주식(Section 306 stock)의 경우 역시 E&P를 감소시킴

201) IRS, "General Instructions for Certain Information Returns(2021), Guide to Information Returns(If any date shown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legal holida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where the return is to be filed, the due date is the next business day),"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99gi>, 검색일자: 2021. 6. 21.; 주식에 대해 지급한 배당, 자본소득 분배, 비과세 분배 등과 같은 분배와 청산 분배(section 1.1471-4(d)(5)(i)(A) 또는 Regulation section 1.1471-4(d)(2)(iii)(A)의 채택에 따라 보고한 분배를 포함). 600달러 이상의 청산은 제외함

202) §6042; Reg. §1.6042-2(c)

203) §6042(c)

대한 법인소득세 신고와 함께 Form 5452(Corporate Report of Nondividend Distributions)를 제출하여야 함

-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발행법인 등은 해당 처분이 발생한 다음 해의 1월 15일까지 Form 8937(Report of Organizational Actions Affecting Basis of Securities)을 제출하여야 함²⁰⁴⁾
-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에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금전 배분 또는 주식 분할을 포함하여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다만 Form 1099-DIV를 통해 보고한 배당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배제함

2. 일본

가. 회사법

1) 잉여금의 배당²⁰⁵⁾

- 일본의 현행 잉여금 배당제도는 2001년 「상법」 개정과 2005년 「회사법」 제·개정을 통하여 정비되었음
- 2001년 「상법」 개정 시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정준비금의 감소 절차를 마련하여 그 사용 용도를 자유롭게 하는 등 자본 규제와 관련된 규정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완화함²⁰⁶⁾

204)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7(12/2017) Report of Organizational Actions Affecting Basis of Securities," <https://www.irs.gov/instructions/i8937>, 검색일자: 2021. 6. 21.

205) 손영화(2006), 김춘(2012) 등 선행연구에서는 잉여금의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통일적인 재원 규제를 '잉여금의 분배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일본 「회사법」상 '잉여금의 분배'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는 잉여금의 배당, 잉여금의 배당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함

206) 손영화, 2006, p. 371.

-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은 특정목적에 한하여만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보유·처분할 수 있게 됨
- 그 결과 법정준비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준비금 감소절차를 통하여 배당(분배) 가능한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²⁰⁷⁾
- 2005년에는 「회사법」을 제정하고, 잉여금 배당을 포함한 회사재산 유출 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인 재원규제를 마련하여 제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개정함
 - 「회사법」은 기존 「상법」 제2편(회사) 및 각 법률에 흩어진 회사 관련 법 규정을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하여 제정한 것임²⁰⁸⁾
- 잉여금의 배당은 이익배당(중간배당 포함)뿐만 아니라 자본금 또는 준비금 감소에 따른 자본의 환급을 포함하는 개념임
 - 「상법」 개정으로 준비금 감소절차를 통하여 기타자본잉여금의 배당(자본의 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의 재원이 더 이상 이익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이익의 배당 대신 잉여금의 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함²⁰⁹⁾
- 잉여금 배당제도하에서는 잉여금의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그 재원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제함²¹⁰⁾
 - 잉여금의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행위라는 점, 즉 채권자 입장에서의 담보재산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봄²¹¹⁾
- (현물배당) 금전이 아닌 기타 재산으로도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으로는 배당할 수 없음²¹²⁾

207) 일본 「회사법」 제448조 제1항; 「회사계산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208) 권중호, 2006, p. 52.

209) 일본 현지 세무사무소, 「「剰余金の配当」「利益の配当」「剰余金の分配」の区分について」, <https://www.tax-support.xyz/Q-and-A/法人税/「剰余金の配当」「利益の配当」「剰余金の分配」の区分について-1005>, 검색일자: 2021. 7. 9.

210) 손영화, 2006, p. 379.

211) 김춘, 2012, p. 77.

- 현물배당 시에는 주주의 금전배분청구권, 배당재산의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를 받음²¹³⁾
 - 주주가 금전배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현물배당재산의 가액은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평가함²¹⁴⁾

- (자기주식 취득) 일본은 2003년 9월 25일 「상법」이 개정되어 정관에 정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함
 - 분배가능한 잉여금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되고 자기주식 보유 기간 동안에는 자기주식에 대해 배당을 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²¹⁵⁾
 - 사업양도, 합병, 사업분할, 주식교환 등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분배가능한 잉여금을 초과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하여야 함²¹⁶⁾

- (이익의 자본편입²¹⁷⁾) 금전 또는 그 외의 재산 등 주금의 납입 없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²¹⁸⁾ 이 경우 「회사법」상 잉여금의 배당으로 보지 않음
 - 이익의 자본편입은 주주로부터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증자)하는 행위로, 그 실질은 우리나라의 주식배당과 유사함
 - 이익의 자본편입으로 감소하는 잉여금은 증자 효력발생일의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음

212) 일본 「회사법」 제454조 제1항 제1호

213) 일본 「회사법」 제455조 내지 제457조

214) 일본 「회사법」 제455조 제2항; 일본 「회사계산규칙」 제154조

215) 일본 「회사법」 제155조; 일본 「회사법」 제461조 제1항

216) 일본 「회사법」 제469조; 제785조; 제797조; 제876조

217) 일본은 당초 2006년 「신회사법」 시행 이전 「상법」상 이익의 자본편입을 허용하였다가, 「신회사법」 시행 이후 자본거래와 이익거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 일정 기간(2006~2009년) 「회사계산규칙」(구 규칙 제48조)에 따라 자본에 편입할 수 있는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제한한 바 있음. 그러나 각종 단체의 요청에 따라 2009년 「회사계산규칙」의 개정(신 규칙 제25조)을 통해 이익의 자본편입을 허용함(일본 법무부, 「「会社法施行規則」及び「会社計算規則」(平成21年法務省令第7号, 平成21年3月27日公布)の一部改正のお知らせ」, <https://www.moj.go.jp/MINJI/minji179.html>, 검색일자: 2021. 9. 7.)

218) 일본 「회사법」 제450조 및 「회사계산규칙」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2항 제1호; 주식회사는 잉여금을 감소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음

2) 분배재원규제(분배가능액)

- 분배가능액은 배당 등 효력발생일의 잉여금을 토대로 산정되며, 잉여금의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총액은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할 수 없음²¹⁹⁾
 - 즉 잉여금이라도 모두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배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할 수 있음²²⁰⁾

- 이하본문에서 일본 「회사법」상 잉여금부터 효력발생일의 분배가능액의 산정에 이르는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봄

가) 일본 「회사법」상 잉여금 산정

- 잉여금은 이익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잉여금 증가분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²²¹⁾
-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의 잉여금은 다음 ①에서 ②를 차감한 것으로, 이는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타자본잉여금과 기타이익잉여금의 합계임²²²⁾
 - ①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액과 자기주식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액과 자본금·준비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②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위 ①에서 기타자본잉여금과 기타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금액

219) 일본 「회사법」 제461조 제1항; 그 외에도 양도제한주식의 회사에 의한 매수(일본 「회사법」 제139조 제1호 및 제2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회사법」 제173조 제1항),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 청구에 의한 취득(「회사법」 제176조 제1항), 소재불명주주의 주식의 취득(「회사법」 제197조 제3항), 단수주의 처분에 따른 취득(「회사법」 제23조 제4항 및 제235조 제3항) 시에도 동일하게 분배가능한도 규제가 적용됨(김춘, 2012, pp. 78~80)

220) 이준봉, 2006, p. 33; 잉여금의 배당은 반드시 기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중의 잉여금 배당 효력발생일 당일에 분배가능액이 존재하면 배당이 가능함

221) 일본 「회사법」 제446조; 이준봉, 2007, p. 172; 김춘, 2012, p. 77.

222) 일본 「회사법」 제446조 제1항; 「회사계산규칙」 제149조

〈표 Ⅲ-5〉 일본 「회사법」상 잉여금 산정방법(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구분	내용
+ ① 금액 ¹⁾	+ (자산+자기주식 장부가액) - (부채+자본금·준비금)
- ② 금액 ²⁾	+ (자산+자기주식 장부가액) - (부채+자본금·준비금) - 기타자본잉여금 - 기타이익잉여금
사업연도 종료일의 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기타이익잉여금

주: 1) 일본 「회사법」 제446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2) 일본 「회사법」 제446조 제1호 마목: 「회사계산규칙」 제149조
 자료: 일본 「회사법」 제446조 제1호 및 「회사계산규칙」 제149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배당 등 효력발생일의 잉여금은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의 잉여금액에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일 사이에 잉여금의 가산항목 및 차감항목을 조정하여 산출함

〈표 Ⅲ-6〉 일본 「회사법」상 잉여금 산정방법(배당 등의 효력 발생일 기준)

구분	내용
사업연도 종료일의 잉여금	〈표 Ⅲ-5〉 참고
+ 가산항목	+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¹⁾ +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의 자본금·준비금 감소에 따른 잉여금 전입액 ²⁾
- 차감항목	-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 소각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의 잉여금 배당금액 ³⁾ - 그 외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 ⁴⁾
= 배당 등 효력 발생일의 잉여금	-

주: 1) 기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대가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
 2) 「회사법」 제447조 및 제448조; 「회사계산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3) 잉여금의 배당은 「회사법」 제454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함
 4) 「회사계산규칙」 제150조: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의 잉여금의 처분액 등(잉여금 감소에 따라 자본금 또는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 잉여금 배당에 따른 법정준비금 계상액을 포함함)
 자료: 일본 「회사법」 제446조 제2호 내지 제7호; 「회사계산규칙」 제150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가산항목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의 자기주식처분손익, 자본금·준비금 감소의 잉여금 전입액을 포함함
- 차감항목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의 소각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잉여금 배당금액, 그 외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함

나) 일본 「회사법」상 분배가능액 산정

- 분배가능액은 잉여금과 별도로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며 사전적인 분배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함²²³⁾
- 분배가능액은 배당 등 효력발생일의 잉여금을 기초로 임시결산에 따른 기간손익을 반영하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²²⁴⁾
 - 효력발생일의 잉여금이란,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배당 효력 발생일까지의 잉여금 증감을 반영하여 계산한 잉여금을 말함
 - 분배가능액에는 잉여금과 달리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포함하지 않음

〈표 III-7〉 일본 「회사법」상 분배가능액 산정방법(배당 등의 효력 발생일 기준)

구분	내용
효력 발생일의 잉여금	〈표 III-6〉 참고
+ 가산항목	· 임시결산서류에 따른 기간의 이익 ¹⁾ · 임시결산서류에 따른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대가
- 차감항목	· 효력 발생일의 자기주식 장부가액 ·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후의 자기주식 처분대가 · 임시결산서류에 따른 기간의 손실 ²⁾ · 그 외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 ³⁾
= 효력 발생일의 분배가능액	-

주: 1) 「회사계산규칙」 제156조

2) 「회사계산규칙」 제157조

3) 「회사계산규칙」 제158조: 사업연도 종료 이후 영업권 등의 조정, 기타유가증권·토지재평가차액의 평가차손 등의 가감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자료: 일본 「회사법」 제461조 제2항

223) 김춘, 2012, p. 81.

224) 일본 「회사법」 제461조 제2항; 「회사계산규칙」 제156~제158조; 김춘, 2012, pp. 81~82.

나. 세법

1) 과세개요

가) 배당소득

- 일본 세법상 ‘배당소득’은 주식발행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와 관련하여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투자신탁 등의 수익분배 등으로 주주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함²²⁵⁾
 - 다만 법인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제외함
- 잉여금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²²⁶⁾
 - 다만 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과 분할형분할²²⁷⁾ 및 주식분배에 의한 것은 의제배당 사유로 규정함
- 이익의 배당은 합명회사·합자회사·합동회사 또는 특정목적회사(SPC)가 그 지분이나 구수에 따라 지불하는 형태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상의 조합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을 말함
 - 이익의 배당은 중간배당을 통한 금전의 분배²²⁸⁾를 포함하며, 분할형분할 및 주식 분배에 의한 것은 제외함

225) 일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일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이외에도 기금이자, 투자신탁 및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분배,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따른 금전의 분배 등이 배당소득에 포함됨

226) 일본 현지 세무사무소, 「「剰余金の配当」「利益の配当」「剰余金の分配」の区分について」, <https://www.tax-support.xyz/Q-and-A/法人税/「剰余金の配当」「利益の配当」「剰余金の分配」の区分について-1005>, 검색일자: 2021. 7. 8.)

227) 일본 「소득세법」 제2조 제12호의9에서 규정하는 분할(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신탁의 분할을 포함)로, 우리나라의 인적분할에 해당함(이준봉, 2006, p. 179)

228)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중간배당)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분배를 말함

- 잉여금의 분배는 그 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정함
- (의제배당)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 상당액을 잉여금의 배당 등으로 보고 배당 등으로 보는 금액을 의제배당²²⁹⁾으로 과세함²³⁰⁾
 - 합병·분할형분할·주식분배(적격인 경우 제외)
 - 자본의 환급 및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
 - 자본의 환급은 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잉여금의 배당²³¹⁾ 및 출자의 등 감소 분배를 말함
 - 자기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 출자의 소각(자기주식의 소각 제외), 출자 또는 지분의 반환
 - 조직변경
- ‘의제배당소득’은 주주가 교부받은 금전 등의 대가가 해당 법인의 자본금 등의 금액 중 교부의 원인이 된 주식 또는 출자에 대응하는 부분(이하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함²³²⁾
 - ‘자본금 등의 금액’이란 세법상 개념으로 회계상 대차대조표상 자본 항목과 별도로 관리함²³³⁾
 -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주주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금액’으로 독자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산정 방식에 대해 후술하는 ‘3)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처리 - 가. 세법상 자본금등의 관리’ 편에서 살펴봄
- (이익의 자본편입) 이익의 자본편입은 현행 일본 세법상 과세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229) 배당소득은 본래 이익 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며, 의제배당소득은 형식적으로 이익 처분은 아니지만 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김종근, 2016, p. 137; p. 141)

230) 일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31) 분할형 분할 및 주식분배에 의한 것은 제외함

232) 오종문, 2020, p. 223; 김종근, 2016, p. 142.

233)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6호 및 제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이익의 자본편입은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및 기타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의 한 형태이며, 기업회계의 측면에서는 주식의 1주당 자본금의 금액은 증가하지만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²³⁴⁾
- 2001년 이전에는 일본 세법상 이익의 자본편입을 i) 이익의 배당(의제배당)과 ii) 주주에 의한 배당금의 재출자 두 단계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음
- 그러나 2001년 세제 개정 시 의제배당 과세규정이 재정비되었으며,²³⁵⁾ 주주에 대해 금전 등의 교부가 없는 경우의 의제배당 과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익의 자본편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됨²³⁶⁾
 - 일본 「소득세법」상 정착된 해석에 따르면 주식분할, 이익의 자본편입 등 주주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한 과세하지 않음²³⁷⁾
- 기업회계의 측면에서 이익의 자본편입은 이익잉여금 등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과 이익적립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준비금·잉여금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액은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 계산 시 차감 조정하며, 동 금액은 세법상 이익적립금액에 다시 가산 조정됨
 - 세법상 자본금은 ‘주주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금액’으로, 이익의 자본편입에 따른 무상증자는 주주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함²³⁸⁾
- 결과적으로 자본에 편입된 금액은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이익적립금액에 해당하며, 이익의 자본편입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더라도 추후 잉여금 배당 시점에 배당(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음
 - 이익의 자본편입 이후 감자 또는 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배당을 하는 경우 세법상 이익적립금액 감소에 대응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²³⁹⁾

234) 김종근, 2016, p. 143.

235) 2000년 5월 「상법」 개정으로 회사분할제도가 창설됨에 따라 2001년에 기업조직 재편체제의 관점에서 의제배당과 관련한 세제를 전면 검토·개정함(자료: 일본 금융청, 「投資法人税制に関する調査研究」, <https://www.fsa.go.jp/common/about/research/20140507/02.pdf>, 검색일자: 2021. 9. 9.)

236) 일본 국세청, 「平成13年度法人税関係法令の改正の概要(企業組織再編成関係)」,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hojin/kaisei2001/01.htm>, 검색일자: 2021. 9. 7.

237) 김종근, 2016, p. 143.

238)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 주주에게 금전 외의 기타 재산으로서 배당하는 경우(‘현물분배’²⁴⁰)에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²⁴¹
 - 현물분배는 잉여금의 배당·이익배당·잉여금의 분배 및 자기주식 취득,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중 하나의 사유로 그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현물분배법인은 해당 재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²⁴²
 - 다만 조직개편 등에 활용되는 적격현물분배²⁴³의 경우 현물분배법인이 분배 직전의 장부가격에 의해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²⁴⁴ 현물분배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나) 양도소득

- 의제배당 사유에 따라 주주 등에게 교부한 대가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본의 환급과 관련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으로 간주함²⁴⁵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 즉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투자 원본의 반환으로 보는 것임

239) 2001년 6월 「상법」 개정으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익적립금 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즉 세법상 자본금 등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프로라타(プロラタ) 계산방법이 도입됨(자료: 일본 금융청, 「投資法人税制に関する調査研究」, <https://www.fsa.go.jp/common/about/research/20140507/02.pdf>, 검색일자: 2021. 9. 9.)

240) 일본 「법인세법」 제2조 12의5의2; 일본 세법에서는 현물배당 대신 현물분배라는 용어를 사용함

241) 東日本銀行 コンサルNEWS No. 186, 「株式会社が株主に対し現物分配を行った場合の法人税法の取扱い」, 2015. 8. 16., https://www.higashi-nipponbank.co.jp/cgi-public/cgi/upload/contents_consultant_news/39/file_1457057809IGTLgVoHwEVagRYsB8vvvXnwAtECZrCNWpTyWzD.pdf, 검색일자: 2021. 7. 26.

242)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법인세법」 제62조의5 제1항

243) 적격현물분배는 현물분배법인과 피현물분배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고, 그 현물분배에 의하여 자산을 이전받는 자가 그 현물분배 직전에 해당 내국법인(분배법인)과 완전지배관계인 내국법인(피분배법인) 뿐인 경우를 말함(「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5)

244) 「법인세법」 제62조의5 제3항

245) 일본 「조세특별자치법」 제37조의10 제3항

- 양도수입금액 의제배당 사유와 관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식의 취득원가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함²⁴⁶⁾
 - 양도와 관련된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산출함²⁴⁷⁾

다) 의제배당 및 양도소득 계산방법

-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자본의 환급과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봄
 - 먼저 주식발행법인이 자본의 환급과 자기주식 취득을 사유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세법상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과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구분함²⁴⁸⁾
 - 자본의 환급과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계산 산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출자환급과 양도소득으로, 후자는 의제배당으로 세무처리함
 -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주주 매개로 인한 양도수입금액으로 처리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가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함²⁴⁹⁾
 -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1) 자본잉여금의 감소를 통한 자본의 환급

-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의 배당 중 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배당을 의미함
 - 기업회계의 측면에서는 기타자본잉여금과 기타이익잉여금 중에서 그 재원으로 결정할 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회계처리가 우선함²⁵⁰⁾

246) 일본 「법인세법」 제61조의2; 「조세특별자치법」 제37조의10 제4항

24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제1항

248) 송동진, 2017, p. 43.

249)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상장주식은 의제배당 과세는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 ‘(2) 자기주식 취득’ 편에서 설명함

250) 일본 「회사계산규칙」 제23조 제1호 및 제2호

- 세법상으로도 재원별 분배 또는 배당 순서와 관련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법인의 회계처리를 따르지만 재원별 과세방법은 달리 규정함²⁵¹⁾
 - 기타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해당 배당액 전액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봄
 -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안분계산을 통하여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을 계산함
- 기타자본잉여금의 감소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과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구분함
- 여기서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자본의 환급 직전 자본금 등의 금액에 순자산 감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²⁵²⁾
 - 순자산 감소비율은 자본의 환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①)가 자본의 환급 직전 순자산 장부가액(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① 자본의 환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잉여금의 배당을 말함
 - ② 자본의 환급 직전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표 III-8〉 양도수입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 = 자본의 환급 직전 자본금 등의 금액¹⁾ × $\left(\frac{\text{자본의 환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2)} }{\text{자본의 환급 직전 순자산 장부가액}^{3)} } \right)^{4)}$ • 의제배당금액 = 자본의 환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 -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
--

- 주: 1) 환급 직전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의 합계액
 2) 주식과 관련된 잉여금의 배당으로서 기타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배당금
 3) 환급 직전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4) 순자산 감소비율

자료: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51) 김종근, 2016, pp. 138~140.

252)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①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② 제4호

- (양도소득) 양도수입금액에서 자본의 환급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
 - 앞서 계산한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수입금액으로 처리함²⁵³⁾
 - 양도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에 순자산 감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²⁵⁴⁾
 - 자본의 환급 이후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순자산 감소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조정하여야 함
 - 주식 양도와 관련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 산출방법은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을 적용함²⁵⁵⁾

〈표 Ⅲ-9〉 양도소득 계산 및 주식의 취득가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 = 양도수입금액 - 관련주식의 취득원가 ● 양도수입금액 =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 = 자본의 환급 직전 자본금 등의 금액 × 순자산감소비율¹⁾ ● 관련주식의 취득원가 = 종전주식의 취득가액 × 순자산감소비율¹⁾ ● 환급 후주식의 취득가액 = 종전주식의 취득가액 × (1 - 순자산 감소비율¹⁾)

주: 1) 자본의 환급에 따라 지급한 대가를 자본의 환급 직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나눈 비율
 자료: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의제배당) 법인이 기타자본잉여금 감소를 수반하는 자본의 환급을 사유로 지급하는 대가에서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정함

25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10 제3항 제4호; 제37조의11 제3항

254) 일본 「법인세법」 제6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9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255)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2) 자기주식 취득

- (양도소득) 자기주식 취득으로 교부받은 대가에서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며,²⁵⁶⁾ 주식 양도수입금액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함²⁵⁷⁾²⁵⁸⁾
-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직전 자본금 등의 금액을 직전 발행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자기주식 취득 직전 1주당 자본금 등의 금액)에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함²⁵⁹⁾
- 자기주식 취득 직전의 자본금 등의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둘 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종류마다 구분하여 당해 자기주식 취득 직전의 자본금 등(종류자본금액)과 종류주식 수를 계산하여야 함
- (의제배당)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교부받은 대가 중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으로 과세함²⁶⁰⁾
- 다만 거래소 시장²⁶¹⁾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예: 상장주식) 의제배당으로 과세 처리하지 않으며,²⁶²⁾ 자기주식 취득대가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의 차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²⁶³⁾

256) 일본 「법인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10 제3항 본문 및 동항 제5호

257) 일본 「소득세법」 제33조 제3항

258) 일본 국세청,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1. 7. 13.

259)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6호

260) 일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5호

261)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소(상장 유가증권 금융상품거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인가금융상품거래협회 등)가 개설된 시장을 말함

262) 그 외에도 기타 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취득 및 취득청구권부주식·취득조항부주식·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소득세법」 제57조의4 제3항 제1~3호) 또한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함

2) 주주 과세

가) 개인 주주²⁶⁴⁾

- (배당소득)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대상이며, 국내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²⁶⁵⁾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이하 ‘배당공제’)받을 수 있음²⁶⁶⁾
 - 종합과세 시 5~45%의 초과누진세율²⁶⁷⁾로 과세되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함
 - 배당공제율은 과세총소득²⁶⁸⁾ 구간에 따라 5%, 10%(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 관련

26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11 제3항

264) 일본 국세청,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1. 7. 13.

265)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금전의 분배 및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를 의미함

266) 기금이자, 국내외사모공사채 등의 수익분배에 따른 배당, 외국주가지수연동형특정주식 특정외화증권 투자신탁 수익분배에 따른 배당, 특정목적신탁·특수목적회사·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및 신고분리과세 또는 원천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공제를 받을 수 없음(자료: 일본 국세청, 「No.1250 配当所得があるとき(配当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50.htm> 검색일자: 2021. 7. 13.)

267) 일본의 과세소득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일본 「소득세법」 제89조)(자료: 일본 국세청, 「No.2260 所得税の税率」,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검색일자: 2021. 7. 13.)

(단위: %, 엔)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950,000엔 이하	5	0	9,000,000엔 초과 18,000,000엔 이하	33	1,536,000
1,950,000엔 초과 3,300,000엔 이하	10	97,500	18,000,000엔 초과 40,000,000엔 이하	40	2,796,000
3,300,000엔 초과 6,950,000엔 이하	20	427,500	40,000,000엔 초과	45	4,796,000
6,950,000엔 초과 9,000,000엔 이하	23	636,000	-	-	-

268) 총소득금액은 손실의 이월공제를 적용한 후의 다음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1. 이자 및 배당소득(원천분리과세 제외),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잡소득 및 종합과세 단기 양도소득 금액
2. 종합과세 장기양도소득과 임시소득 합계액의 2분의 1

(자료: 大和市, 「総所得金額、総所得金額等、合計所得金額の違いについて」, <http://www.city.yamato>.)

배당소득의 경우 2.5%, 5%)의 비율이 적용됨²⁶⁹⁾

- 잉여금 배당 등 관련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배당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① 과세총소득이 1천만엔 이하: 10%
 - ② 과세총소득이 1천만엔을 초과하고 과세총소득금액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천만엔 이하: 10%
 - ③ ①과 ② 외의 경우: (과세총소득금액-1천만엔-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 배당소득)의 5%, 5% 적용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
-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 관련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배당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① 과세총소득이 1천만엔 이하: 5%
 - ② 과세총소득이 1천만엔을 초과하고 과세총소득금액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천만엔 이하: (과세총소득금액-1천만엔)의 2.5%, 그 외 배당소득 5%
 - ③ ①과 ② 외의 경우: 배당소득의 2.5%

〈표 III-10〉 잉여금배당 등에 대한 배당공제

과세총소득 구간	배당공제액 계산	
	잉여금의 배당 등 관련 배당소득 ¹⁾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 관련 배당소득
① 과세총소득금액 1천만엔 이하		배당소득×5%
②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을 초과하고, 과세총소득금액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천만엔 이하인 경우	잉여금의 배당 등 관련 배당소득×10%	(과세총소득 - 1,000만엔) ×2.5% + 그 외 배당소득×5%

lg.jp/web/shizei/shizei01211371.html, 검색일자: 2021. 7. 29.)

269) 일본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 관련 배당소득은 보고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독자의 이해를 위해 반영함

〈표 III-10〉의 계속

과세총소득 구간	배당공제액 계산	
	잉여금의 배당 등 관련 배당소득 ¹⁾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 관련 배당소득
③ ①과 ② 외의 경우 ²⁾	{과세총소득금액 - (1천만엔 +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에 관한 배당소득)} × 5% + 그 외 배당소득 × 10%	배당소득 × 2.5%

주: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및 금전의 분배와 관련된 배당소득

2) 과세총소득금액 중 배당소득 외의 소득이 1천만엔 미만인 경우 표의 산식에 따르며, 1천만엔을 초과할 경우 잉여금의 배당 등 관련 배당소득은 5%,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 관련 배당소득은 2.5%를 적용함

자료: 일본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 상장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경우 종합과세 외에도 신고분리과세 또는 원천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²⁷⁰⁾
 - 신고분리과세는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20.315%²⁷¹⁾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과 배당금의 손익통산이 가능함
 - 신고분리과세는 연간 수령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적용해야 함
 - 원천분리과세는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1회에 지급받는 배당금마다(원천징수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마다)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또는 상장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의 경우 신고분리과세 또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음

270) 일본 국세청, 「No.1331 上場株式等の配当等に係る申告分離課税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1.htm>, 검색일자: 2021. 7. 13.

271) 소득세 15%, 부흥특별소득세 0.315%(= 15% × 2.1%), 주민세 5%로 구성됨. 부흥특별소득세는 기본소득세액에 2.1%를 적용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함(자료: 일본 국세청,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1. 7. 19.)

- 다만 소액배당²⁷²⁾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개인 주주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²⁷³⁾
 - 개방형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의 지급 통지서
 - 의제배당에 대한 지급 통지서
 - 상장 주식배당 등의 지급 통지서
 - 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
- (양도소득) 주식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며,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여 20.315%의 세율로 과세함²⁷⁴⁾
 - 상장 주식 등에 관한 양도 소득 등의 금액과 일반 주식 등과 관련되는 양도 소득 등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함

나) 법인 주주

- (배당소득) 법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소득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²⁷⁵⁾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잉여금의 배당(중간배당²⁷⁶⁾ 포함), 이익배당, 잉여금의 분배, 금전의 분배²⁷⁷⁾에 따른 것을 말함

272) 소액배당이란 1종목당 1회 지급 배당금이 '10만엔×배당계산기간의 월수(최대 12개월)÷12' 이하인 경우를 말함

273) 일본 국세청, 「利子所得と配当所得の課税方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18/b/03/order2/yogo/3-2_y01.htm, 검색일자: 2021. 7. 13.

274) 일본 국세청,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1. 7. 19.

275) 일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276) 일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

277) 일본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따른 금전의 분배

- 배당의 기인이 되는 주식에 대한 법인 주주의 지분율 및 지배목적에 따라 20%, 50%, 100%의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됨²⁷⁸⁾
- (양도소득) 법인 주주의 주식의 양도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²⁷⁹⁾

3)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처리

- 가) 세법상 분배재원 등의 관리²⁸⁰⁾
- 통상적으로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은 기업회계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상당하고, '이익적립금액'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앞서 살펴본 의제배당의 경우 회계상 기타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취급하였지만 세법상으로는 동일한 금액만큼 자본금 등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게 됨
 - 즉 세무상으로는 일부는 자본금 등의 감소, 일부는 이익적립금의 감소된 것으로 취급함
 - 의제배당 사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금 등의 금액과 이익적립금액은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특히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배당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함

278) KPMG Japan,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https://home.kpmg/jp/ja/home/insights/2013/10/taxdtd.html>, 검색일자: 2021. 7. 13.

279) 일본 「법인세법」 제61조의2 제1항

280) 山口剛史 税理士事務所, 「税務上の「資本金等の額」」, <https://ty-tax-accountant.com/archives/6983#會計上の資本金等>, 검색일자: 2021. 7. 7.

- 「법인세법」에서는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과 이익적립금액의 증감을 별도의 신고서식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함²⁸¹⁾
- 법인의 결산상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세무 목적상 이익적립금액 및 자본금 등의 금액의 내용과 그 증감을 관리하며, 세법상 대차대조표의 기능을 함

〈표 III-11〉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과 회계상 자본항목 비교

세법상 대차대조표 항목			회계상 대차대조표 항목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본금 등 ¹⁾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외		자본잉여금 ³⁾
	이익적립금액 ²⁾			이익잉여금 ⁴⁾

- 주: 1) 자본금 등은 주식발행 등에 의한 납입 자본에서 '세법상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익의 자본편입이나 자본잉여금의 배당 등은 반영하지 않음
 2) 세법상 이익적립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가감항목을 반영하고 잉여금의 배당, 자본의 환급이나 자기주식 취득 등의 사유에 따른 의제배당을 차감함
 3) 자본준비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됨
 4) 이익준비금과 기타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자료: 일본 국세청, 「税法上の資本の部」,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kohon/houjin/pdf/30/11.pdf>, 검색일자: 2021. 7. 7.

(1)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

-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금액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²⁸²⁾

281) 구체적인 서식명은 「별표 5 (1) 자본금 등의 금액 계산에 관한 명세서」임(자료: 일본 국세청, 「別表五 (一) 利益積立金額及び資本金等の額の計算に関する明細書」,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houjin/shinkoku/itiran2018/pdf/05_01.pdf, 검색일자: 2021. 6. 30.)

282)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 (조정 후 자본금 산정) 정령에 따르면 먼저 의제배당 등의 사유로 인한 회계상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감소)액을 다시 차감(가산) 조정하여 세법상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조정 후 자본금 등)²⁸³⁾
 - 주식발행 등에 의한 납입 자본의 금액에 자본금 등의 감소액을 가산하고,²⁸⁴⁾ 이익 준비금 또는 잉여금 감소에 따른 자본금 증가액을 차감함²⁸⁵⁾
 - 결과적으로 세법상 납입 자본은 자본금과 이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주식발행 초과금)을 합한 주식발행가액의 의미임

- (세법상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 차감) 그 다음 단계로 안분계산을 통하여 산출한 '세법상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만을 앞서 처리한 조정 후 자본금 등에서 차감하여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을 산출함
 - 기타자본잉여금 감소에 의한 자본의 환급의 경우 세법상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직전 자본금 등의 금액에 순자산감소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²⁸⁶⁾
 -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세법상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직전 자본금 등의 금액을 당해 직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²⁸⁷⁾

(2) 세법상 이익적립금액

- 세법상 '이익적립금액'은 법인의 유보 소득을 말하며, 정령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에서 특정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함²⁸⁸⁾

283)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금액을 더하고 제13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가산 및 차감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설명의 간소화를 위하여 합병·분할·주식분배 또는 연결소득 등의 예외적인 증감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284)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2호

285)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286)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8호

287)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0호

288)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액을 더하고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가산 및 차감항목이

- 정령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²⁸⁹⁾에서 다음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함²⁹⁰⁾
 - 가산항목은 당초 법인세 세무신고 시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항목으로 다음 항목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수입배당금·환급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이월결손금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차감항목은 당초 법인세 세무신고 시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된 항목으로 법인세 및 지방법인세, 도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 납부할 세액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잉여금의 배당 등에 따른 지급액이나 자본의 환급, 자기주식 취득 등의 사유에 따른 의제배당(즉 이익적립금에 대응하는 금액)이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나) 원천징수 신고의무 등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의 지급 시점에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징수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²⁹¹⁾
 - 상장주식의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증권사 및 은행 등 계좌 관리기관, 이하 '금융기관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의제배당의 경우 교부한 금전 등의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의제배당금액에 한하여 원천징수함

발생할 수 있으나, 설명의 간소화를 위하여 분할형분할·적격분할·현물분배·주식분배 등의 사유에 따른 예외적인 증감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289) 일본 「법인세법」에 따른 「별표 4. 소득금액에 관한 명세서」상 (42)란에 기재되는 소득금액으로, 당기 순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가감하고 기부금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등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말함(영 (0)보다 작은 경우: 결손금액)

290)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291) 일본 「소득세법」 제181조; 제183조

- 원천징수세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상장주식 등²⁹²⁾의 배당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20.315%임²⁹³⁾
 - 다만 상장주식 등에 대해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 등 외의 배당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20.42%)을 적용함
 - 상장주식 등 외의 배당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20.42%임²⁹⁴⁾
 -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배당금 등을 지급할 때 순자산 감소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부여됨²⁹⁵⁾
 - 일반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에 관한 안내」 등의 문서를 통하여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는 사실과 의제배당금액 및 순자산 감소비율 등을 통지함²⁹⁶⁾²⁹⁷⁾
 -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통지해야 하므로²⁹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게 의제배당 사유 및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²⁹⁹⁾

-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 등의 지급 조서’를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³⁰⁰⁾

292)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란 상장주식의 배당, 특정 공사채 이자, 공모공사채·공모주식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 등을 말함(자료: 일본 국세청, 「利子所得と配当所得の課税方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18/b/03/order2/yogo/3-2_y01.htm, 검색일자: 2021. 7. 13.)

293) 소득세 15%, 부흥특별소득세 0.315%(=15%×2.1%), 주민세 5%로 구성됨. 부흥특별소득세는 기본 소득세액에 2.1%를 적용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함(자료: 일본 국세청,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1. 7. 13.)

294) 소득세 20% 및 부흥특별소득세 0.42%(=20%×2.1%)이며,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음

295)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의9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5항

296) 배당을 수령한 납세자로서는 배당의 원천을 알 수 없으므로 잉여금을 배당하는 법인이 배당소득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배당 시마다 주주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이준봉, 2007, p. 180)

297) 일본 SBI증권, 「資本剰余金を原資とする配当を受取りましたが、税金の取扱」, <https://faq.sbisee.co.jp/answer/5eba5601171ba70012b8fe93?search=true>, 검색일자: 2021. 7. 21.

298)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6의2 제24항

299)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6의2 제38항

300) 일본 「소득세법」 제225조 제1항 제2호

- 배당 등의 지급조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³⁰¹⁾
 -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개인번호 또는 법인번호
 - 그 지급이 확정된 잉여금 배당 등의 금액(의제배당금액 포함) 및 그 지급이 확정된 날
 - 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그 외에 법에서 열거하는 항목 및 기타 참고해야 할 사항

4. 독일

가. 회사법³⁰²⁾

1) 이익분배(배당)

- 독일 「주식법」에 따른 이익배당은 금전과 기타 재산인 현물배당이 있음
 -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주식발행법인 간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우 발생하는 숨은 이익분배로 규제함³⁰³⁾
 - 독일 「주식법」에 따른 이익배당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배당이나 상여의 지급을 금함³⁰⁴⁾
- (현물배당) 독일은 정관에 현물배당(Sachausschüttung)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결의에 의해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³⁰⁵⁾

301) 일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3항

302) 본문에서는 주식회사를 규율하는 독일 주식법을 중심으로 설명함. 독일은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 등 회사재산 유출에 대해서는 독일 「주식법(AktG)」에서 규정하고 분배제한규제 등 회계처리하는 1985년 「대차대조표지침법(BiLiRiG)」과 독일 「상법(HGB)」에서 규정함(김춘, 2012, p. 101; 정순현, 2019, p. 382)

303) 김춘, 2012, p. 102.

304) 독일 「주식법」 제57조

305) 독일 「주식법」 제58조 제5항; 제174조 제2항 제2호; 최준선, 2006, p. 127.

- 현물배당의 대상물은 관련 법령이 아닌 학설에 따라 규정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시장에서 처분가능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자기주식 취득) 독일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며, 수량규제와 재원규제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함³⁰⁶⁾
 -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합하여 자본금(Grundkapital)³⁰⁷⁾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수량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음³⁰⁸⁾³⁰⁹⁾
 -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모든 주주가 동일 가격으로 매각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함³¹⁰⁾
 - 자기주식 취득은 명목자본의 감소로 처리되며,³¹¹⁾ 자기주식으로 인한 금액은 회사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취득총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 준비금은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기주식 처분에 한해 환입이 허용됨³¹²⁾

306) 최준선, 2006, p. 150.

307) 자본금의 최소 명목가액은 5만유로임(독일 「주식법」 제7조)

308) 김춘, 2012, p. 104; 독일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이 매수위탁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 포괄승계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하는 경우는 재원이나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음

309) 정순현, 2019, p. 197;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음(독일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제2문)

- 회사가 직면한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이 필요한 경우
- 근로관계를 맺은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으로 주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
- 무상취득 또는 금융기관의 위탁매입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 포괄승계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 자본감소 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 취득가액 범위와 주식 수량에 대해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있고 최장 5년의 수권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경우

310) 독일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8호; 정순현, 2019, p. 203.

311) 독일 「상법」 제272조 제1a항

312) 독일 「주식법」 제71조 제2항 제2문

-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계속 보유가 가능하지만,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음³¹³⁾
 - 자기주식은 대차대조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음³¹⁴⁾
- (주식상환) 정관에 규정이 있고, 주주총회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통상적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해 주식상환은 가능함³¹⁵⁾
- 다만 주식발행가액이 전액 납입된 주식에 관해 무상으로 회사 처분에 맡겨지거나 대차대조표 이익 또는 기타 임의적립금으로 주식상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요구되지 않음³¹⁶⁾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데, 회사재산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신주만 발행됨³¹⁷⁾
- 결손의 경우에는 자본전입이 허용되지 않으며,³¹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정관에 명시된 종전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³¹⁹⁾
 - 기타 임의적립금은 처분되지 않은 경우 자본전입이 허용됨
 - 통상 자본증가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며, 주주총회에서 4분의 3 이상 다수결이 필요함

313)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근로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독일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준비금 적립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독일 「주식법」 제71조 제1항)
 - 적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자본금(Grundkapital)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주식은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독일 「주식법」 제71c조 제2항)

314) 김춘, 2012, p. 102.

315) 독일 「주식법」 제237-제239조; 최준선, 2006, p. 213.

316) 독일 「주식법」 제237조 제3항

317) 정순현, 2019, p. 373; 독일 「주식법」 제208조

318) 독일 「주식법」 제208조 제2항

319) 독일 「주식법」 제208조 제1항

2) 분배재원규제

- 주주에 대한 이익분배(배당)는 연말 결산서의 대차대조표 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³²⁰⁾³²¹⁾
 -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³²²⁾
 -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지급은 출자환급으로 보지 않음³²³⁾
 - 회사재산과 주주 재산을 분리하여, 회사재산에서 주주에게 급부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³²⁴⁾
 -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한 출자환급을 금지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주주 평등원칙의 위반을 방지함

- 대차대조표 이익(Bilanzgewinn)³²⁵⁾은 주주총회³²⁶⁾에서 그 처분이 결정되며, 잉여금의 처분과 전입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연도 소득 또는 손실(Jahresüberschuss/-fehlbetrag)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년도 이월잉여금(결손금)을 가감함
 - 그리고 이익잉여금(Gewinnrücklagen)과 자본준비금(Kapitalrücklage) 계정으로 부터의 전입과 잉여금 처분을 반영하여 산출됨³²⁷⁾
 -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gesetzliche Rücklage), 자기주식 준비금(Rücklage für eigene Anteile), 임의준비금 등으로 구성함³²⁸⁾

320) 독일 「주식법」 제57조 제3항

321) 독일 「주식법」 제174조: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경우 독일 「상법」 제268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이익을 분배할 수 있음

322) 독일 「주식법」 제57조

323) 독일 「주식법」 제57조 제1항 제2문

324) 정순현, 2019, p. 395.

325) 독일 「주식법」 제1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손익계정에 표시될 금액을 의미함

326) 독일 「주식법」 제174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 동법 제58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이익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에서 동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이익잉여금, 주주 분배액, 이익잉여금 전입액, 이월잉여금 등을 명시해야 함(Haufe, "Ergebnisverwendung-3.2.2. 3 Verwendung des Bilanzgewinns," https://www.haufe.de/finance/haufe-finance-office-premium/ergebnisverwendung-3223-verwendung-des-bilanzgewinns_idesk-PI20354_HI11154256.html, 검색일자: 2021. 9. 29.)

327) 독일 「주식법」 제158조 제1항; 제2항

- 이익준비금은 주식회사와 합자회사를 대상으로 매기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손실을 공제한 금액의 20분의 1 이상을 자본준비금과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또는 정관에 규정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하고,³²⁹⁾ 오직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자기주식 준비금은 자산으로 계상된 자기주식 상당액을 독일 「상법(HGB)」 제272조 제4항에 따라 적립함
- 임의준비금에는 회사정관에 의해 적립할 수 있는 법정 적립금(satzungsmäßige Rücklagen)³³⁰⁾과 기타 이익 준비금(anderen Gewinnrücklagen)이 있음
- 자본준비금은 명목자본을 초과하는 주식발행가액,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계상한 금액, 우선주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됨³³¹⁾
- 자본준비금 등 전입금액은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주주의 출자금 납부 의무를 면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³³²⁾
 - 자본준비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으로 처분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소득 또는 이월된 소득이 없거나 임의적립금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³³³⁾³³⁴⁾
- 독일은 이익배당규제와 관련하여 지급불능기준을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음³³⁵⁾
 - 주주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유출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고 이사가 이러한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³³⁶⁾

328) 독일 「상법」 제272조 제3항

329) 독일 「주식법」 제150조 제2항

330) 독일 「주식법」 제58조

331) 독일 「상법」 제272조

332) 독일 「주식법」 제230조

333) 독일 「주식법」 제150조 제3항; 제4항

334) 자본준비금이 명목자본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적자보전 및 전년도 결손보전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명목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은 결손보전(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외에도 명목상 자본전입으로 사용가능함(독일 「주식법」 제207~제220조)

335) 김춘, 2012, p. 103.

336) 독일 「주식법」 제92조 제2항

〈표 III-12〉 독일 「주식법」 제158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이익 산출(이익처분)

해당 연도 소득/손실 ①
전년도 이월손익 ②
자본준비금으로부터 전입 ③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전입 ④
a) 이익준비금	
b) 자기주식 준비금	
c) 법정 적립금	
d) 기타 임의 적립금	
이익잉여금 처분 ⑤
a) 이익준비금	
b) 자기주식 준비금	
c) 법정 적립금	
d) 기타 이익 준비금	
대차대조표 이익	(= ① ± ② + ③ + ④ - ⑤)

자료: 독일 「주식법」 제158조 제1항

나. 세법

1) 과세개요

- 독일은 「회사법」에 따른 분배 재원과는 관련없이 세무상 배당가능이익(ausschüttbaren Gewinn)을 기준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이익분배(배당)의 과세 여부를 결정함
-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분배 재원으로 하는 주주에 대한 이익분배(배당)[Gewinnanteile(Dividenden)]는 자본자산(Kapitalvermögen) 소득의 한 유형인 배당소득으로 과세함³³⁷⁾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출자환급(Rückzahlung von Einlagen)은 원칙적으로 자본자산 소득을 구성하지 않음³³⁸⁾

337)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338)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문

- 여기서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세무상 대차대조표 자본에서 자본금(명목자본)과 세무상 출자계정(Das Steuerliches Einlagekonto)의 잔액을 차감하여 구함³³⁹⁾³⁴⁰⁾
 - 세무상 출자계정은 '3)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처리' 편에서 후술함

- (자기주식 취득)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됨³⁴¹⁾
 - 법인 주주의 경우 수령하는 대가와 자기주식 취득가액 차이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15.825%의 세율이 적용됨
 -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의 95%에 대해 과세되지 않음
 - 개인 주주의 경우 수령하는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26.3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본자산 소득으로 과세함
 - 다만 5년 동안 특정 시점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는 중대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40%의 필요경비 공제가 허용됨
 - 그러나 교부하는 대가가 정상가액(the arm's length)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숨은 이익분배로 처리됨
 - 숨은 이익분배에 대해 주식발행법인은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법인³⁴²⁾의 명목자본이 증가한 경우 해당 신주의 가치는 주주에 대한 소득으로 보지 않음³⁴³⁾

339)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5문

340) 결과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은 이익준비금(Gewinnrücklage), 이익잉여금(Gewinnvortrag), 당기순이익(Jahresüberschuss)으로 구성됨(송동진, 2017, p. 33, 각주 94)

341) UK Practical Law, "Tax on Corporate Transactions in Germany,"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1-501-6627? 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277154](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1-501-662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277154), 검색일자: 2021. 9. 29.

34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유럽회사,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함

343) 독일 「자본전입 조세특례법」 제1조; 본래 명칭은 'Kapitalerhöhungssteuergesetz(Gesetz über

- 다만 기타 임의준비금(von sonstigen Rücklagen)의 자본전입으로 증가한 명목 자본은 특별계정(der Sonderausweis)의 명목자본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³⁴⁴⁾
 - 차후 명목자본을 이익잉여금 등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명목자본을 먼저 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함³⁴⁵⁾
- 특별계정은 '3)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처리' 편에서 후술함

□ 예시

- 20x1년 12월 31일 현재 유한회사(GmbH) A의 세무상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은 24만유로이며 자본금(명목자본) 7만 5천유로, 세무상 출자계정 3만유로임
- 다음 회계연도에 이익분배(배당)로 13만유로를 주주에게 지급하고, 숨은 이익 분배가 5만유로가 있었음
- 이 경우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13만 5천유로를 초과하는 이익배당과 숨은 이익분배 4만 5천유로 중 3만유로는 세무상 출자계정에서 상계됨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이익배분(배당) 13만 5천유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세무상 출자계정과 상계되는 3만유로는 출자환급으로 처리됨³⁴⁶⁾

- 회사로부터 출자환급으로 처리되는 급부를 수령하는 주주는 해당 금액을 주식의 장부 가액 등에서 차감하고,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급부는 주식 양도(사업소득)로 봄³⁴⁷⁾

steuerrechtliche Maßnahmen bei Erhöhung des Nennkapitals aus Gesellschaftsmitteln)'임

344)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문

345)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독일 조세정보 플랫폼, "Steuerliches Einlagekonto,"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s/steuerliches-einlagekonto/>, 검색일자: 2021. 9. 29.

346) 세무상 출자계정 잔액은 0 미만으로 감액될 수 없음(「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3문)

347) 독일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표 III-13〉 독일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및 이익분배(배당) 처리의 예시

(단위: 유로)

구분		금액
회사 처리	세무상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240,000
	자본금(명목자본)	75,000
	세무상 출자계정	30,000
	배당가능이익 ¹⁾	135,000
주주 과세 효과	이익분배(배당) 및 숨은 이익분배	180,000
	배당소득 ²⁾	135,000
	출자의 환급(세무상 출자계정 감소) ³⁾	30,000
	주식 양도 ⁴⁾	15,000

주: 1) 배당가능이익은 자기자본에서 명목자본과 세무상 출자계정을 차감하여 구함

2) 배당가능이익 범위까지 배당소득으로 처리됨

3) 세무상 출자계정은 0 미만으로 감액될 수 없음

4)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출자환급으로 처리되는 금액 중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료: 독일 조세정보 플랫폼(<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s/steuerliches-einlagekonto/>, 검색일자: 2021. 9. 29.)을 참고하여 저자 수정함

2) 주주 과세

□ 주주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익배분(배당) 등 주식으로부터 유래한(aus Aktien) 급부와 숨은 이익분배(versteckte Gewinnauschüttung)는 자본재산으로부터의 수입에 해당함³⁴⁸⁾

○ 세무상 대차대조표 자본에서 자본금(명목자본)과 세무상 출자계정을 차감한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 회사급부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됨

-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세무상 출자계정을 감소시키면서 출자환급으로 처리됨³⁴⁹⁾

- 출자환급은 회사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³⁵⁰⁾ 주주의 자본자산 소득을 구성하지

348) 송동진, 2017, p. 33;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문; 제2문

349)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3문

350)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문

않음³⁵¹⁾

- (명목자본의 분배) 임의적립금 등 자본전입으로 인한 명목자본(특별계정)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구성함³⁵²⁾
 - 자본금(명목자본) 감소의 경우 특별계정에 기록된 자본금(명목자본)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처리되며(전자),³⁵³⁾ 감액금액이 특별계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출자 계정의 감소로 처리함(후자)
 - 전자의 경우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본자산 소득으로 처리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³⁵⁴⁾

가) 개인 주주

-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이익분배(배당)는 자본자산 소득으로 25%³⁵⁵⁾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Abgeltungsteuer)가 적용됨
 - 이 경우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1인당 801유로의 소득공제를 적용되며, 실제 경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되지 않음³⁵⁶⁾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은 출자환급으로 보고, 주주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독일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매매와 유사한 거래(veräußerungsähnlicher Vorgang)’로 간주됨
 - 2008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주식부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에 대해 25%³⁵⁷⁾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됨³⁵⁸⁾³⁵⁹⁾

351)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문
 352)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제2문;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353)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제1문
 354) 독일 조세정보 플랫폼, “Nennkapital,”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n/nennkapital/#D063101300005>, 검색일자: 2021. 9. 29.
 355)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solidarity levy) 5.5% 별도임
 356)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9항
 357) 연대부가세 55% 별도임
 358)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김무열, 2020, p. 202.

- (자본자산 소득 비교과세 Günstigerprüfung) 자본자산 소득을 종합소득 합산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³⁶⁰이 원천징수세율(2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자본자산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음³⁶¹
 - 그러나 801유로를 초과하는 소득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

- (사업용 자산 또는 실질 지배) 한편 자본자산 소득이 사업용 자산에 귀속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지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본자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³⁶²
 -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개인 주주가 물적 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최소 1%의 지분을 갖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양도소득의 경우 개인 주주가 지난 5년 이내 1% 이상의 지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본자산 소득과 달리 소득공제 또는 비용공제의 적용이 허용됨
 - 사업용 자산에 귀속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부분과세(Teileinkünfteverfahren) 되므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됨³⁶³
 - 개인투자자가 독일 「소득세법」 제32d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분과 관련하여 소득 관련 실제 필요경비³⁶⁴를 공제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자본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Kapitalertragsteuerabzug)는 여전히

359) 2008년까지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한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360) 독일 종합소득세율은 면세점인 9,408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최소 14%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361) 독일 「소득세법」 제32a조 및 제32d조 제6항

362) 김무열, 2020, pp. 203~204; 독일 「소득세법」 제32d조 제2항 제3호

363) 부분과세방법(Teileinkünfteverfahren)이라고도 함; 독일 「소득세법」 제3c조 제2항;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40호; 독일 「소득세법」 제17조

364) 독일 「소득세법」 제3c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60% 공제(Abzug zu 60%)를 의미

이루어짐³⁶⁵⁾

나) 법인 주주

- 법인 주주가 독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과 주식매매로 실현된 양도 소득은 경상소득에 포함되며, 95%의 소득공제가 허용됨³⁶⁶⁾
 - 다만 아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연도 개시일자로 법인 주주의 지분권이 10% 미만임³⁶⁷⁾
 - 주식발행법인이 배당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함³⁶⁸⁾
 - 법인 주주가 건강 및 생명보험회사 또는 특정 금융기관임³⁶⁹⁾
 - 95%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자본손실의 통산은 제한될 수 있음³⁷⁰⁾

3)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처리

-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상 대차대조표 자본은 자본금(명목자본), 세무상 출자계정, 이익 잉여금으로 이루어지므로 회계상 대차대조표 자본과는 구분됨
 - 자본금(명목자본)은 다시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명목자본)과 준비금 등 자본전입으로 인한 자본금(명목자본)으로 구분됨
 -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명목자본을 제외한 부분은 세무상 출자계정으로 기록, 관리됨
 - 세무상 대차대조표 자본에서 자본금(명목자본)과 세무상 출자계정을 차감한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 주주에 대한 회사급부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됨

365) 독일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3문

366)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제3항

367)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3항

368)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369) 다만 EU 모자회사 지침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는 제외함(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7항; 제8항; 제9항)

370) Bloomberglaw, "Country Guides-4. Corporate Tax Capital Gains, Losses, Group Treatment,"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QLPVH8#section\(1\)](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QLPVH8#section(1)), 검색일자: 2021. 9. 29.

〈표 III-14〉 회계상 대차대조표 자본과 세무상 자본 비교

회계상 대차대조표 자본	세무상 대차대조표 자본
자본금(명목자본)	자본금(주주 출자 명목자본)
	자본금(특별계정 기재 명목자본) ¹⁾
자본준비금	세무상 출자계정
이익잉여금	(배당가능) 이익잉여금

주: 1) 기타 임의준비금(von sonstigen Rücklagen)의 자본전입으로 증가한 명목자본
 자료: 회계상 자본은 독일 「상법」 제266조 제3항, 제272조를 참고하고, 세무상 자본은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가) 세무상 출자계정과 특별계정 관리³⁷¹⁾

-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³⁷²⁾은 주주 등이 출자한 자본 중에서 자본금(명목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독일 「법인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세무상 출자계정(Steuerliches Einlagekonto)에 집계하여야 함
 - 주주의 납입 자본과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법인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됨
 - 세무상 출자계정은 공개 출자(offene Einlagen)에 따른 자본준비금(Kapitalrücklage)과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n)로 이루어짐³⁷³⁾³⁷⁴⁾

□ (세무상 출자계정의 증감 내역)³⁷⁵⁾

371) 독일 세무신고 플랫폼, "WAS IST DAS STEUERLICHE EINLAGEKONTO," <https://www.steuba.de/koerperschaftsteuer/steuerliches-einlagekonto-gmbh-zugang/>; 독일 조세정보 플랫폼, "Steuerliches Einlagekonto,"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s/steuerliches-einlagekonto/>, 검색일자: 2021. 9. 29.

372) 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독일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en)를 포함함 (여기서 자본회사는 주식회사, 주식형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을 의미함). 그리고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 법인,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른 협회 등을 의미함

373) 송동진, 2017, p. 33;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3문

374) 송동진, 2017, pp. 32~33.

- 증가 내역으로는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n),³⁷⁶⁾ 신주 발행 납입금,³⁷⁷⁾ 유한 회사(GmbH) 주주 등 추가 납입으로 적립된 준비금,³⁷⁸⁾ 명목자본의 감소,³⁷⁹⁾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증가(Vermögenszugänge,³⁸⁰⁾ 독일 「조직재편법」³⁸¹⁾에 따른 현물출자 중 명목자본 초과분, 동독 관련 손실 공제³⁸²⁾ 등이 있음
 - 감소 내역으로는 분할로 인한 자산처분(Vermögensabgänge),³⁸³⁾ 적립금의 명목자본 전입,³⁸⁴⁾ 독일 「유한회사법」에 따른 주식 프리미엄의 상환,³⁸⁵⁾ 배분가능한 이익을 초과하는 분배³⁸⁶⁾ 등이 있음
 - 세무상 출자계정의 잔액은 영(0) 미만으로 감액될 수 없음³⁸⁷⁾
- (예시) 세무상 출자계정 처리³⁸⁸⁾
- 예시 (1) 2010년 9월 주식 10% 취득(취득가액 3만 5천유로), 2011년 9월 주식 10% 취득(취득가액 1만유로)하고 2012년 세무상 출자계정의 환급으로 처리되는 회사재산 유출(분배)이 2만 5천유로임
 - (출자계정 환급액 배분) 2010년 9월 취득한 주식 지분과 2011년 9월 취득한 주식 지분에 배분되는 출자계정의 환급은 각각 1만 2,500유로(=2만 5,000×50%)임

375)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독일 조세정보 플랫폼, “Steuerliches Einlagekonto,”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s/steuerliches-einlagekonto/>, 검색일자: 2021. 9. 29.

376) 독일 「법인세법」 제8조 제3항 제3문

377) 독일 「상법」 제272조 제2항 제1호

378) 독일 「상법」 제272조 제2항 제4호

379)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제1문

380) 독일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제3항

381) 독일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 UmwG)」 제20조

382) 독일 「법인세법」 제35조

383) 독일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384)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385)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법률(GmbHG)」 제26조 범위 내에서 주주 추가 납입된 금액으로 자본손실을 충당할 필요가 없는 경우

386) 공개 이익분배나 숨은 이익분배를 의미함(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3문)

387)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4문

388) 독일 세무신고 플랫폼, “WAS IST DAS STEUERLICHE EINLAGEKONTO,” <https://www.steuba.de/koerperschaftsteuer/steuerliches-einlagekonto-gmbh-zugang/>, 검색일자: 2021. 9. 29.; 독일 DB 플랫폼, “§ 27 KStG bei Anteilerwerb zu verschiedenen Zeitpunkten,” <https://daten.bank.nwb.de/Dokument/Anzeigen/770343/>, 검색일자: 2021. 9. 29.

- (주식 취득가액 조정 및 과세대상 소득 계산)

- 2010년 9월 주식 취득가액에서 출자계정의 환급액을 차감한 후 취득가액 2만 2,500유로(=3만 5천-1만 2,500)로 조정함
- 2011년 9월 주식 취득가액에서 출자계정의 환급액을 차감한 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출자계정의 환급액 2,500유로(1만 2,500유로-1만유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됨

○ 예시 (2) 2010년 9월 주식 10% 취득(취득가액 3만 5천유로), 2017년 1월 주식 15% 취득(취득가액 12만 5천유로)하고, 2015년과 2017년 세무상 출자계정의 환급액으로 처리되는 회사재산 유출(분배)을 각각 10만유로, 6만유로로 수령함

- 2015년 출자계정의 환급

- (주식의 취득가액 조정 및 과세대상 소득 계산) 2015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0유로로 조정한 이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6만 5천유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됨

- 2017년 출자계정의 환급

- (출자계정의 환급액 배분) 출자계정의 환급액 6만유로는 2010년 취득 주식 지분 10%와 2017년 취득 주식 지분 15%에 각각 2만 4천유로(=6만×10%/25%), 3만 6천유로(=6만×15%/25%)씩 배분함
- (주식의 취득가액 조정 및 과세대상 소득 계산)
 - ① 2010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0이므로 배분액 2만 4천유로 전액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됨
 - ② 2017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12만 5천유로에서 배분액 3만 6천유로를 차감하여 8만 9천유로로 조정함

□ (특별계정) 기타 임의준비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자본금(명목자본)이 증액된 경우³⁸⁹⁾ 주주 출자로 인한 명목자본과 구분하기 위해 해당 증액에 대해 독일 「법인세법」

389)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자본전입 대상이 되는 준비금의 사용 순서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세무상 출자계정의 잔액이 다른 준비금보다 먼저 명목자본으로 전입되는 것으로 봄. 만일 세무상 출자계정의 잔액이 없는 경우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자본전입이 고려되는데, 이 경우 기타

제28조에 따른 특별계정(Sonderausweis)을 관리하여야 함³⁹⁰⁾

- 특별계정에 표시되는 자본금(명목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는 주주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주주 출자금의 환급에 해당하는 명목자본의 감소와의 구분을 목적으로 함
 - 특별계정의 자본금(명목자본)이 감소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분배가 있다고 봄³⁹¹⁾
 - 특별계정의 증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증가: 기타 임의준비금의 명목자본전입, 합병·분할을 통한 특별계정의 이전
 - 감소: 자본감소, 법인 해산, 조직재편성에 따른 법인 참여, 독일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세무상 출자계정 증액
 - 특별계정의 종료
 - 세무상 출자계정과 상계처리: 회계연도 말 특별계정 잔액과 세무상 출자계정 잔액은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상계처리해야 함
 - 자본감소: 자본금(명목자본)의 감소 또는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특별계정을 먼저 감액해야 함
 - 자본감소 금액이 특별계정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세무상 출자계정을 증액시킴
-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발행법인의 자본 감소로 처리되며, 교부하는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지 않음³⁹²⁾
- 독일 과세당국 유권해석³⁹³⁾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감소로 보고, 세무상

임의준비금의 전입으로 인한 명목자본 증가액은 특별계정에 별도 표시하고 관리하여야 함

390) 독일 조세정보 플랫폼, "Sonderausweis der in Nennkapital umgewandelten Rücklage gem. § 28 KStG,"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s/sonderausweis-der-in-nennkapital-umgewandelten-ruecklage-gem-%C2%A7-28-kstg/>, 검색일자: 2021. 9. 29.

391)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제2문

392) UK Practical Law, "Tax on Corporate Transactions in Germany,"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1-501-662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277154](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1-501-662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277154), 검색일자: 2021. 9. 29.

393) BMF v. 27.11.2013 - IV C 2 - S 2742/07/10009 BStBl 2013 I S. 1615

출자계정과 특별계정에서 처리됨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자본감소는 주식액면으로 이루어지는데, 명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 명목자본은 감소하며 명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출자계정의 차감으로 처리됨³⁹⁴⁾
- 자기주식을 명목금액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지급 없이 자본감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명목가액 차액만큼 특별계정을 차감하고,³⁹⁵⁾ 만일 차액이 특별계정 잔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출자계정에 가산하여야 함

나) 원천징수 신고의무 등

- 주식발행법인인 개인 주주 자본자산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5%³⁹⁶⁾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³⁹⁷⁾
- 자본회사는 세무상 출자계정의 잔고 확정을 위한 신고서를 매 사업연도 말에 제출 하여야 함
 - 그리고 자본회사는 지분소유자에게 세무상 출자계정의 감소에 따른 분배액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함³⁹⁸⁾

394)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3문

395) 독일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제1문

396) 연대부가세 5.5% 별도임

397) 독일 「소득세법」 제43조; 제43a조

398)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제3항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회사법

- 한국과 조사국 모두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은 일반적으로 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 자본감소, 잔여재산분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재원이나 절차에 대해 「회사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을 통해 규제함
 - 이하 본문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

- 전통적으로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 일본, 독일은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방지 장치로 엄격한 법정자본제도를 채택하였는데,³⁹⁹⁾ 한국과 일본은 그러한 경향이 최근 완화됨
 - 한국은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무액면주식제도를 허용하고 자기주식 취득 및 법정 준비금의 감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미국은 주(州)별로 「회사법」을 달리 적용하는데, 과반수 주의 「회사법」은 법정자본 제도를 폐지한 현대적 입법 유형을 채택함⁴⁰⁰⁾
 - 전통적 입법 유형은 법정자본제도에 기초하여 배당, 주식상환, 자기주식 취득, 주식 배당 등에 대한 재원과 절차를 달리 규정함

399) 최준선, 2006, pp. 17~22.

400) 다만 미국 상장회사 과반수는 전통적 입법 유형인 「텔라웨어주 회사법」 적용을 받음

- 법정자본제도를 폐지한 현대적 입법 유형은 주주에 대한 재산 유출을 분배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재원과 절차를 규정함
 - 일본은 2001년 「상법」 개정과 2005년 「회사법」 제·개정을 통해 법정자본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음
 - 액면주식제도 폐지, 법정준비금의 용도 폐지 및 감소제도 도입, 자기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이 있음
 - 독일은 비교적 법정자본제도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됨⁴⁰¹⁾
- 조사국은 「회사법」 등에서 회사재산 유출 관련 재원과 한도에 대해 규정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배당(또는 분배) 재원과 한도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잉여금으로 확대함
- 한국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주주의 출자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소정의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
 - 법정준비금 감소 제도의 도입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당초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잉여금까지 확대함
 - 미국은 주(州) 「회사법」마다 분배 재원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분배는 규제하고 있음
 - 전통적 입법 유형의 경우 법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순자산액(잉여금)이 있는 경우(잉여금 기준) 또는 전기에서 이월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당기순이익 기준) 분배가 가능함
 - 현대적 입법 유형의 경우에는 분배 후 순자산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순자산 기준) 또는 분배 이후 일정 재무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유보이익이 있는 경우(유보이익 및 재무비율 기준) 주주에 대한 분배가 가능함
 - 일본은 자산에서 부채, 자본금,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잉여금(기타자본 잉여금과 기타이익잉여금)을 토대로 하여 분배 재원과 한도를 규정함

401) 최준선, 2006, p. 21.

- 그 결과 배당(분배)가능한 이익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 기타자본잉여금 감소액도 포함됨
- 독일은 연간 소득에서 이익잉여금 전입액과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더하고 이익준비금(법정준비금 포함) 등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대차대조표 이익을 분배재원으로 함
- 다만 자본준비금 전입액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처분될 수 있고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주주 출자금 미납액과 상계할 수 없음

〈표 IV-1〉 조사국별 「회사법」 등에 따른 배당(분배) 재원과 한도

구분		배당(분배) 재원과 한도
한국	상법 개정 이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순자산-자본금-법정준비금 등)
	상법 개정 이후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준비금전입액(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¹⁾
미국	전통적 입법 유형	잉여금(=순자산-법정 자본금 ²⁾) 또는 당기순이익
	현대적 입법 유형	순자산 기준, 유보이익 기준
일본		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기타이익잉여금-자기주식 장부가액)
독일		대차대조표 이익 (=연간 소득±이월손익+자본준비금 전입액 ³⁾ +이익잉여금 전입액-이익준비금 등)

주: 1) 한국은 「상법」 개정으로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감소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할 수 있게 됨
 2) 법정자본금은 주식액면액 합계(무액면주식은 자본잉여금으로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합계)와 이익잉여금 등 자본전입된 금액 중 감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임
 3) 독일은 대차대조표 이익에 포함된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주주 출자금 미납부액과 상계할 수 없음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유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이 있음

- 한국은 「상법」에 따른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과 상환주식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함
- 미국은 현대적 입법 유형(「개정모범사업회사법」)과 전통적 입법 유형(델라웨어주와 뉴욕주)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회사재산 유출 규정에 차이가 있음
 - 전통적 입법 유형은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등 재산 유출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데, 자기주식 취득이나 주식상환은 잉여금이 없는 경우 자본금에 의한 취득(상환)을 허용함
 - 현대적 입법 유형은 배당(dividend),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과 같은 재산 유출을 분배(distribution)라는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익배당과 동일한 재원의 규정이 적용됨
- 일본은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함
- 독일은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회사 재산유출에 해당함
 - 주식상환은 주로 통상적인 자본감소의 절차(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 가능하지만, 대차대조표 이익이나 임의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 없이 허용됨

〈표 IV-2〉 조사국별 배당(분배)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회사법」상 회사재산 유출

구분		배당(분배)가능이익 재원 회사재산 유출
한국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 상환주식 상환
미국	전통적 입법 유형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 ¹⁾
	현대적 입법 유형	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
일본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
독일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상환

주: 1) 미국(전통적 입법 유형)은 배당가능이익 외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환이 허용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전통적 입법 유형)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배당은 재산유출이 실제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익배당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현대적 입법 유형)과 일본, 독일은 그러하지 않음
 - 한국의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 현물배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재산유출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주식배당을 포함함
 - 미국(전통적 입법 유형)의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 현물배당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재산유출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주식배당을 포함하지만, 미국(현대적 입법 유형)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포함하지 않음
 - 일본의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 현물배당(자기주식 제외)이 있으며, 이익의 자본편입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
 - 독일의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이 있으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익 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나. 세법

1) 배당(분배)가능이익

- 법인 소득과 납입 자본의 구분은 주주 과세의 측면에서 중요한데, 조사국은 「회사법」이나 기업회계의 상당 부분을 차용하면서도 세무 목적상 구분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법인 소득과 납입 자본의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배당(분배)재원이 법인 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주주 과세하지만 납입 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입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 때문임
- 한국을 제외한 조사국은 「회사법」과는 별도로 세무상 자본과 배당가능이익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한국은 주주 과세를 위해 「상법」의 상당 부분을 차용함

- 미국은 법인 소득에 초점을 두고 세무상 E&P 규정을 도입하여 주주 과세제도를 운용함
- 일본은 법인 소득과 납입 자본을 모두 고려하여 세무상 자본금 등과 세무상 이익적립금 항목 규정을 도입하여 주주 과세함
- 독일은 납입 자본에 초점을 두고 세무상 출자계정과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도입하여 주주 과세함

〈표 IV-3〉 조사국별 세무상 법인 소득과 납입 자본의 구분 규정

구분	세무상 법인 소득과 납입 자본의 구분 규정 도입	관련 규정
한국	x ¹⁾	- ¹⁾
미국	○	법인 소득에 초점을 두고 세무상 E&P 운용
일본	○	법인 소득과 납입 자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세법상 자본금 등과 이익적립금 항목 관리
독일	○	납입 자본의 측면에서 세무상 특별계정과 출자계정 관리

주: 1) 한국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상당 부분 차용하여 주주 과세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 조사국별 세무 목적상 이익배당 등 회사재산 유출 관련 배당(분배)재원 규정 방식을 살펴봄
 - 한국은 배당소득 관련 재원은 「상법」을 차용하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 대상 자본준비금 항목을 열거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규정함 - 조세정책, 이중과세 방지, 조세회피 방지의 목적으로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항목을 열거함
 - 미국은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른 분배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P)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무상 E&P 범위 내에서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함

- 일본은 「회사법」 관련 규정과 달리 세무상 자본금 등 항목과 세무상 이익적립금 항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잉여금 분배에 대한 주주 과세 여부를 결정함
 - 기타자본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 분배액을 세무상 순자산 감소분과 의제배당으로 구분하는데, 세무상 순자산 감소분의 계산을 위해 세무상 자본금 등 항목과 세무상 이익적립금 항목을 이용함
- 독일은 세무상 출자계정을 마련하여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 이익분배(배당)는 자본자산 소득으로 과세함
 -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명목자본과 세무상 출자계정을 차감하여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재산 유출에 대해 주주 과세함
- 배당(분배)가능한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국의 세무상 배당(분배)가능이익 산정 규정을 살펴봄
 - 미국의 세무상 E&P는 분배가능한 법인의 경제적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업회계의 이익잉여금 또는 유보소득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과는 구별됨
 - 이월결손금 차감 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 목적상 차감항목(예를 들어 비과세소득, 수입배당금, 주 정부 등 면세채권이자, 연방법인세 환급액 등)을 가산하고, 가산항목(예를 들어 이자비용, 기부금 한도초과 등, 연방 소득세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 일본은 분배가능한 법인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세무상 이익적립금 항목을 산정하는데 역시 기업회계의 이익잉여금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과는 차이가 있음
 - 법인세 신고 목적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출발점으로 하여 수입배당금 등의 차감항목(익금불산입)을 가산하고 법인세 등 가산항목(손금불산입)을 차감하여 세무상 이익적립금 항목을 계산함
 -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때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감소액과 세무상 자본금 등의 차이를 세무상 이익적립금액에서 차감함
 - 독일은 세무상 대차대조표 자본에서 명목자본금과 세무상 출자계정을 차감하여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

- 세무상 출자계정은 주주 납입 자본 중 명목자본을 제외한 자본준비금과 세무상 출자로 처분된 숨은 출자로 이루어짐

〈표 IV-4〉 조사국별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

구분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
한국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 E&P = + 이월결손금 차감 전 법인세 과세표준 + 세무조정상 차감항목(비과세소득, 수입배당금 공제 등) - 세무조정상 가산항목(한도초과 이자비용, 기부금, 연방법인세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 이익적립금 = + 법인세 신고 목적상 조정 후 소득금액 + 세무조정상 차감항목(수입배당금 소득공제 등) - 세무조정상 가산항목(법인세 등) • 세무상 자본금 등 = + 기업회계상 자본금, 자본준비금, 기타자본준비금 - 기타자본잉여금 배분 시 순자산 감소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 +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 자본금(명목자본) - 세무상 출자계정 • 세무상 출자계정 = + 주주 납입 자본 중 자본금(명목자본)을 차감한 금액 합계 + 숨은 출자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2) 주주 과세제도

- 일반적으로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법인 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우선 과세하고, 그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또는 분배)할 때 주주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통상적인 배당소득은 개인 주주 또는 법인 주주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법인 사업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개인 주주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함
 -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경감을 위해 상당부분 과세되지 않음

-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통상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조사국별 과세제도를 살펴봄
 - 한국은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완납적으로 분리 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로 금융소득 종합과세함
 -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 원천징수 수준 이상의 세부담을 과세함
 - 미국은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10~37% (적격 배당소득은 0~20%)의 연방소득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5~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장주식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종합과세 외에도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배당소득 지급 시 20.315%(대주주 및 상장주식 외 20.42%)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독일은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을 25%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 합산 시 적용되는 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4~45%의 누진세율로 과세토록 함
 - 사업용 자산에 귀속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경우 배당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주식배당) 주식발행법인은 내부 유보된 법인 소득(이익잉여금)을 「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자본전입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할 수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세무상 배당가능 이익에서 자본전입을 반영하지 않고 독일은 세무상 특별계정(독일)을 이용하여 실제 재산 유출이 있을 때까지 주주 과세이연함

- 한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주주 과세함
 - 주주에 대한 배당이 우선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주에 의한 주금 납입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주주 과세함
- 미국은 일반적으로 주식배당은 주주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시점에는 주주 과세하지 않음
 - 주식배당으로 인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더라도 세무상 E&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이후 재산 유출이 있을 때까지 주주 과세이연함
 - 그러나 주주가 주식 또는 현금 등 배당 여부를 선택하거나 종류주식이 혼합되어 분배되는 등 사유에 대해 주식배당은 과세되는데 이 경우 세무상 E&P가 감소됨
- 일본은 주식배당을 과세대상 사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시점에는 주주 과세하지 않음
 - 기업회계 측면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자본편입으로 편입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현행 일본 세법상 이익적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이후 재산 유출이 있을 때까지 주주 과세이연함
- 독일은 이익준비금 등 자본전입으로 인해 명목자본이 증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주식은 주주의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식을 분배하는 시점에는 주주 과세하지 않음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증가한 자본금(명목자본)을 특별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이후 자본금(명목자본)을 이익잉여금 등으로 전입하여 주주 분배하는 경우 특별계정상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주주 과세함

〈표 IV-5〉 조사국별 이익잉여금 등 자본전입 관련 주주 과세

구분	과세 여부	과세 시점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 변동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변동
한국	○	배당 시점	감소	- ¹⁾
미국	○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감소 시점	감소	변동없음 ²⁾
일본	○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감소 시점	감소	변동없음
독일	○	재산 유출 시점	감소	- ³⁾

주: 1) 한국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하지 않음
 2) 주식배당이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주 과세하며, 이 경우 자본전입된 이익잉여금 감소는 세무상 E&P에 반영함
 3) 독일은 세무상 특별계정(자본금) 규정을 이용하여 실제 재산 유출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과세 이연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 (자기주식 취득) 조사국은 주식발행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개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한국은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 매매 목적인 경우에는 주주의 관련 주식 처분에 따른 손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소각 목적인 경우에는 대가와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이를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함
 - 미국은 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주식매매로, 그 외에는 회사재산 분배로 보고 과세함
 - 주식매매로 보는 경우에는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회사재산 분배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 전액에 대해 Section 제301조의 3분법(배당소득, 출자자본 환급,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 일본은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를 양도소득과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대가를 자본금 등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과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전자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후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 다만 거래소 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없이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독일은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자본자산 소득으로 과세함
 - 교부하는 대가가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표 IV-6〉 조사국별 자기주식 취득 대가 관련 주주 과세

구분	과세 여부	소득구분	소득금액
한국	○	양도소득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
		배당소득 (의제배당)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
미국	○	양도소득 ¹⁾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
		배당소득 ¹⁾²⁾	대가 전액
일본	○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의제배당) ⁴⁾	양도소득금액: 세무상 자본금 등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대가)과 주식 취득가액 차이 ³⁾
			의제배당: 세무상 이익적립금 감소에 해당하는 금액 ³⁾
독일	○	자본자산 소득(양도소득) ⁵⁾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 차이

주: 1) 실질 지배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 회사재산 유출로 배당소득 과세함

2) 미국의 경우 회사재산 분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Section 제301조에 따라 세무상 E&P 이내 금액은 배당소득, E&P를 초과하는 부분 중 주식 취득가액까지는 출자환급, 그리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3) 일본의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과세 없이 대가 전액과 주식 취득가액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4) 일본은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배당과 같이 자본금 등 감소에 대응하는 부분과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주주 과세함

5) 다만 독일은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대가 초과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 (이중과세 경감) 조사국 모두 배당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의 방안을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별로 운용함
 - 법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사국은 공통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상당 부분 과세 제외함
 -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사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세액공제, 저율과세, 소득공제 등의 방안을 적용함

- (이중과세 경감-법인 주주) 조사국 모두 법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경감 방안으로 수입배당금 소득공제제도를 운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주주가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됨
 - 내국법인인 법인 주주(지주회사인 법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출자 비율과 피출자법인의 상장 여부에 따라 30~100%(80~ 100%)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허용함
 - 미국의 경우 법인 주주가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함
 - 법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50~100%의 공제율이 적용됨
 - 일본의 경우 법인 주주가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20%, 50%, 100%의 비율로 소득공제가 허용됨
 - 독일의 경우 법인 주주가 독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은 95%의 비율로 소득공제가 허용됨
 - 법인 주주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이중과세 경감-개인 주주)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경감 방안으로 세액공제(한국, 일본), 저율과세(미국), 소득공제(독일)를 적용함
 - 한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경우 개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함

- 배당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한 후(Gross-up) 11%의 비율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
- 미국은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적격배당소득은 최저 0%에서 최고 20%의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됨
- 일본의 경우 개인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함
 -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총소득 구간별로 5%,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독일은 배당소득이 사업용 자산에서 기인하거나 개인 주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40%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허용함
 - 배당소득이 사적 자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경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표 IV-7〉 조사국별 배당소득 이중과세 경감 방안

구분	법인 주주	개인 주주
한국	수입배당금 소득공제 출자 비율과 상장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 30~100%, 지주회사 80~100%의 공제율 적용함	배당세액공제 Gross-up 이후 11%의 세액공제 적용 (다만 종합과세 경우에 한함)
미국	수입배당금 소득공제 지분율에 따라 50~100%의 공제율 적용함	최저 0%~최고 20%의 세율 적용함
일본	수입배당금 소득공제 지분율에 따라 20%, 50%, 100%의 공제율 적용함	배당(세액)공제 Gross-up 없이 과세총소득 구간별 5%, 10%의 공제율 적용 (다만 종합과세 경우에 한함)
독일	수입배당금 소득공제 10% 이상 지분율에 한해 95%의 공제율 적용함	수입배당금 소득공제 40% (사업용 자산에 귀속되는 경우)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조사국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분배)금은 납입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그러나 조사국은 조세납용 방지 목적으로 세무상 배당(분배)가능이익 규정을 도입하여 자본준비금을 배당(분배)재원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와 유사한 효과에 대해 주주 과세함
- 한국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항목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 과세하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재평가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주주 과세하지 않음
 - 과세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 상당액은 주주의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장부가액이 영(0)이 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소득(익금)으로 보지 않음
- 미국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분배)이 세무상 E&P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주주 과세함
 - Section 제301조의 3분법에 따라 세무상 E&P 범위 내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세무상 E&P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환급(장부가액)과 양도소득(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으로 처리함
- 일본은 기타자본잉여금의 감소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제배당, 출자환급, 양도소득으로 처리함
 - 기타자본잉여금의 감소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세무상 자본금 등의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과 이익적립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전자와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차이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후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 독일은 세무상 출자계정을 이용하여 산정한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초과하는 감액배당은 출자환급으로 주주의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주주의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급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표 IV-8〉 조사국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무처리

구분	배당소득	자본 환급 (출자 환급)	양도소득
한국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되는 항목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비과세	- ¹⁾
미국	세무상 E&P 한도 내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	-
	세무상 E&P 한도초과 분배금	세무상 E&P 범위까지 배당소득 과세	초과분은 자본 환급으로 주주 주식 장부가액 차감 주식 장부가액 초과하는 분배금 양도소득 과세
일본	세무상 이익적립금 감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소득 과세	주식 취득가액에 대해 세무상 순자산 감소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자본 환급 처리	세무상 자본금 등 감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순자산감소비율을 적용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 과세
독일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배당(분배)금	배당소득 과세	-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초과 배당(분배)금	배당가능이익 범위까지 배당소득 과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금은 출자 환급 처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금 중 장부가액 초과하는 급부는 사업소득 과세

주: 1) 한국은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부분은
없음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 (주식발행법인 신고의무)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주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미국, 일본, 독일은 주식발행법인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신고의무를 부여함

- 한국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및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통상적인 배당소득(의제배당)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개인 주주에 한함), 배당소득 관련 정보 제공 및 신고의무가 있음
- 미국은 10달러 이상의 회사재산 분배와 비과세 분배를 주주에게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과세당국인에 신고하여야 함
- 일본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순자산 감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항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독일은 세무상 출자계정의 잔고 확정을 위한 신고서를 매 사업연도 말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출자계정 감소에 따른 분배액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함

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소득 국가별 비교

- 본문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소제도를 이용한 배당 예시를 통하여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과세소득을 비교·분석함
 - 주권상장법인인 갑법인은 3개년에 걸쳐 주주에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한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주주가 4개년 차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함
 - 동일 조건하에서 조사국의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시기별 과세소득 금액을 비교함
 - 금융소득 과세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등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용됨으로 국가별 비교를 위한 세효과는 산출하지 않음
 - 일부 국가는 금융손익 간 통산을 허용하지만 본 예시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은 각종 공제항목 차감 전 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원가 외 기타 필요경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 국가별 통용되는 화폐를 원화라고 가정함
 - 자세한 내용은 <표 IV-9>를 참조할 것

〈표 IV-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예시

• 갑법인(주권상장법인)은 20X0. 1. 1. 설립 후 영업 개시함
 • 갑법인의 주식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X0. 1. 1.자 1200주 신주(주식액면 500원) 발행, 같은 해 7. 1.자로 400주(주식액면 500원) 추가 신주 발행함
 • 20X0. 12. 31. 현재 갑법인의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일자	발행주식 수	발행가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총계(순자산)
20X0. 1. 1.	1,200주	25,000	600,000	29,400,000	30,000,000
20X0. 7. 1.	400주	50,000	200,000	19,800,000	20,000,000
합계	1,600주		800,000	49,200,000	50,000,000

• 20X0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4,500만원 감소 결의함
 •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배당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배당은 연 1회(결산배당) 지급됨
 (단위: 원)

연도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누적분)	1주당 배당금 (원)	배당결의액
20X0년	10,000,000	10,000,000		
20X1년	4,600,000	14,600,000	6,000원	9,600,000
20X2년	2,600,000	17,200,000	11,000원	17,600,000
20X3년	11,800,000	29,000,000	10,500원	16,800,000

• 매년 결산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재원으로 함(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법정준비금은 한국 상법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1/2까지만 적립하였다고 가정함(따라서 20X1년도 배당 시 40만원(=Min(배당금의 1/10, 자본금의 1/2))을 적립하고, 20X2년 이후는 의 무적립액이 없음)
 • 20X0부터 20X3년 말까지 당기순이익 및 배당 이외의 자산·부채의 증감요인은 없다고 가정하며, 연도 말 사업연도별 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자본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구분	20X0년 말	20X1년 말	20X2년 말	20X3년 말
자본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자본준비금 ¹⁾	49,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법정준비금 ¹⁾	-	-	400,000	400,000
이익잉여금 ²⁾	10,000,000	59,600,000	52,200,000	46,400,000
자본총계	60,000,000	64,600,000	57,600,000	51,800,000

주: 주주총회 결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이익잉여금에 처분내용이 반영됨
 1)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고,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임
 2) 이익잉여금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전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결의 내용
 (자본준비금 감액 + 법정준비금적립액 + 배당금)

〈표 IV-9〉의 계속

• 갑법인의 주주 구성 및 최초취득원가(장부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A 주주·B 주주는 각각 1인 주주, 기타소액주주 a·b는 다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집단임)

주주	취득일자	주식 수	지분율(%)	취득원가(원)
A	20X0. 1. 1.	400주	25	10,000,000
B	20X0. 7. 1.	160주	10	8,000,000
기타소액주주 a	20X0. 1. 1.	800주	50	20,000,000
기타소액주주 b	20X0. 7. 1.	240주	15	12,000,000
합계	-	1,600주	-	50,000,000

• 각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주주가 수령한 연도별 준비금 감액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구분	20X2. 3. 수령	20X3. 3. 수령	20X4. 3. 수령	총합계
대주주 A	2,400,000	4,400,000	4,200,000	11,000,000
대주주 B	960,000	1,760,000	1,680,000	4,400,000
기타소액주주 a	4,800,000	8,800,000	8,400,000	22,000,000
기타소액주주 b	1,440,000	2,640,000	2,520,000	6,600,000
합계	9,600,000	17,600,000	16,800,000	44,000,000

• 국가별 비교와 계산의 편의 목적상 갑법인의 주주는 20X4년 초에 보유한 모든 주식을 1주당 4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며,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원가를 제외한 필요경비는 없음

•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소득금액(과세표준)의 차이는 없으며(즉 세무조정 사항 없음), 미국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누적금액이 세무상 E&P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자료: 저자 작성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의제)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산출

- 20X2년부터 20X4년까지 자본준비금감액배당으로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표 IV-10〉 참고)
 - 한국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음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미국은 세무상 E&P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분배금은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20X2년부터 20X4년의 주주 배당소득 누적액은 2,900만원임
 - 20X2년은 분배금이 세무상 E&P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주가 수령한 모든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20X3년의 경우 분배금이 세무상 E&P를 초과하므로, 세무상 E&P 범위 내의 금액 76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액 1천만원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주식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 20X4년의 경우 분배금이 세무상 E&P를 초과하므로, 세무상 E&P 범위 내의 금액 1,18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액 500만원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주식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 일본은 순자산 감소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1,397만 4,502원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 독일은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에서 자본금(명목자본)과 세무상 출자계정을 차감하여 산출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배당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20X2년부터 20X4년까지의 주주 배당소득 누적액은 3,120만원임
 - 20X3년의 경우 분배금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므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금액 1,06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액 700만원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주식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 20X4년의 경우 분배금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므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금액 1,10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액 580만원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주식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표 IV-10〉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국가별 배당소득 현황(20X1~20X3년)

(단위: 원)

주주구분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대주주 A	20X2	0	2,400,000	542,415	2,400,000
	20X3	0	1,900,000	1,148,151	2,650,000
	20X4	0	2,950,000	1,803,060	2,750,000
소계		0	7,250,000	3,493,626	7,800,000
대주주 B	20X2	0	960,000	216,966	960,000
	20X3	0	760,000	459,260	1,060,000
	20X4	0	1,180,000	721,224	1,100,000
소계		0	2,900,000	1,397,450	3,120,000
기타소액주주 a	20X2	0	4,800,000	1,084,830	4,800,000
	20X3	0	3,800,000	2,296,302	5,300,000
	20X4	0	5,900,000	3,606,119	5,500,000
소계		0	14,500,000	6,987,251	15,600,000
기타소액주주 b	20X2	0	1,440,000	325,449	1,440,000
	20X3	0	1,140,000	688,891	1,590,000
	20X4	0	1,770,000	1,081,836	1,650,000
소계		0	4,350,000	2,096,175	4,680,000
총계		0	29,000,000	13,974,502	31,200,000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따른 국가별 배당소득을 저자 계산

- 20X2년부터 20X4년까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주주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음(〈표 IV-11〉 참고)
 - 한국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인하여 주주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음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자본 환급으로 처리되어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지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20X3년과 20X4년에 세무상 E&P를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유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음

- 일본은 순자산 감소분에 상응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양도수입금액)이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 583만 8,650원이 발생하는 한편, 순자산 감소분에 상응하는 감액배당액이 자본환급에 해당하는 취득 가액보다 적어 양도손실 583만 8,650원이 발생함
 -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순자산감소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독일은 20X3년과 20X4년에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유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액은 없음

〈표 IV-1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국가별 양도소득 현황(20X2~20X4년)

(단위: 원)

구분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대주주 A	20X2	0	0	371,527	0
	20X3	0	0	763,889	0
	20X4	0	0	810,811	0
소계		0	0	1,946,217	0
대주주 B	20X2	0	0	△445,820	0
	20X3	0	0	△916,667	0
	20X4	0	0	△972,973	0
소계		0	0	△2,335,460	0
기타소액주주 a	20X2	0	0	743,034	0
	20X3	0	0	1,527,778	0
	20X4	0	0	1,621,622	0
소계		0	0	3,892,433	0
기타소액주주 b	20X2	0	0	△668,731	0
	20X3	0	0	△1,375,000	0
	20X4	0	0	△1,459,459	0
소계		0	0	△3,503,190	0
총계	양도소득	0	0	5,838,650	0
	양도손실	0	0	△5,838,650	0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에 따른 국가별 양도소득금액을 저자 계산

2)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 산출

- 20X4년 초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국가별·대주주 및 소액주주별로 다음과 같음(〈표 IV-12〉 참고)
 - 양도소득(양도손실)은 실제 양도대가와 양도 당시 보유한 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임
 - 주식 장부가액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따른 차감액(자본 환급으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후의 장부가액을 말함
 - 양도소득 금액은 한국(5,500만원), 일본(4,402만 5,498원), 미국(2,925만원), 독일(2,760만원)의 순으로 발생했고, 양도손실은 미국(25만원), 독일(80만원)이 발생함
 - 한국의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를 고려한다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1,880만원임

〈표 IV-12〉 주식 양도 시 국가별 양도소득 현황(20X4년)

(단위: 원)

구분	한국 ¹⁾	미국	일본	독일	
대주주 A	16,000,000	9,750,000	13,506,374	9,200,000	
대주주 B	2,800,000	△100,000	1,402,550	△320,000	
기타소액주주 a ²⁾	32,000,000	19,500,000	27,012,749	18,400,000	
기타소액주주 b ²⁾	4,200,000	△150,000	2,103,825	△480,000	
총계	양도소득	55,000,000	29,250,000	44,025,498	27,600,000
	양도손실	-	△250,000	-	△800,000

주: 1)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적용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임. 만일 현행 세법에 따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대주주 A, B의 양도소득을 합한 1,880만원임
 2) a와 b는 다수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합계를 표시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발생 이후 주식 양도 시 국가별 양도소득금액을 저자 계산

3) 요약

- 앞서 설명한 20X1년부터 20X3년까지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따른 20X2년부터 20X4년까지의 주주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과 20X4년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합한 총과세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음(〈표 IV-13〉 참고)
- 주주의 과세소득 총액(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 일본, 독일 모두 5,800만원 이고 한국은 5,500만원(소액주주 비과세 고려시 1,880만원)임
 - 미국, 일본, 독일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20X2년부터 20X4년까지 배당 소득과 양도소득(일본에 한함)으로 주주 과세가 이루어지고, 20X4년 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함
 - 한국은 20X2년부터 20X4년까지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다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20X4년에 주식 양도소득 5,500만원이 발생함
 - 현행 세법에 따라 소액주주 a와 b의 상장주식 양도소득(3,620만원)은 비과세하므로, 실제 주식 양도 과세소득은 1,880만원임⁴⁰²⁾
- 한국과 조사국 간 주주 과세소득 총액 차이인 300만원은 현행 한국 과세당국 유권해석에 따라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주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임
 - 20X4년 A 주주와 소액주주 a가 수령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였는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취득가액 초과분 300만원(A 주주 100만원, 소액주주 a 200만원)은 20X2년부터 20X4년 전 기간에 걸쳐 과세 누락됨

402) 한국은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도입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할 예정임. 현행 세법에서는 소액주주(a, b)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함. 본문과 〈표〉에서는 조사국과의 단순 비교를 위하여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표기함

〈표 IV-1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총과세소득 현황(20X1~20X4년)

(단위: 원)

주주	소득구분		한국 ¹⁾	미국	일본	독일
A	배당 시	배당소득	0	7,250,000	3,493,626	7,800,000
		양도소득	0	0	1,946,217	
	양도 시	양도소득	16,000,000	9,750,000	13,506,374	9,200,000
	소계		16,000,000	17,000,000	18,946,217	17,000,000
B	배당 시	배당소득	0	2,900,000	1,397,450	3,120,000
		양도소득	0	0	△2,335,460	
	양도 시	양도소득	2,800,000	△100,000	1,402,550	△320,000
	소계		2,800,000	2,800,000	464,540	2,800,000
a ²⁾	배당 시	배당소득	0	14,500,000	6,987,251	15,600,000
		양도소득	0	0	3,892,433	
	양도 시	양도소득	32,000,000	19,500,000	27,012,749	18,400,000
	소계		32,000,000	34,000,000	37,892,433	34,000,000
b ²⁾	배당 시	배당소득	0	4,350,000	2,096,175	4,680,000
		양도소득	0	0	△3,503,190	
	양도 시	양도소득	4,200,000	△150,000	2,103,825	△480,000
	소계		4,200,000	4,200,000	696,810	4,200,000
총계	배당 시	배당소득	0	29,000,000	13,974,502	31,200,000
		양도소득	0	0	0	
	양도 시	양도소득	55,000,000	29,000,000	44,025,498	26,800,000
	소계		55,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주: 1) 한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함.
 현행 세법과 같이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를 고려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1,880만원임

2) a와 b는 다수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합계를 표시함

자료: 〈표 IV-7〉부터 〈표 IV-9〉까지의 내용을 저자 요약·정리

2. 시사점

가. 자본준비금 감소제도 적용 사례

- 우리나라 주권발행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소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비상장사인 SK 에너지가 3조 2천억원 상당 자본준비금 감소를 공시한 이후⁴⁰³⁾ 2017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다수 사례를 확인함⁴⁰⁴⁾(〈표 IV-14〉 참조)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18건, 코스닥 시장의 경우 12건, 그리고 코넥스 시장의 경우 2건의 자본준비금 감소에 대한 공시가 관찰됨⁴⁰⁵⁾
 - 주로 2018년(8건)과 2019년(8건)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코넥스 시장은 볼빅 외 거의 확인된 사례가 없음
 - 롯데지주(5조 5천억원)와 우리금융지주(4조원), 현대중공업지주(2조원), 쌍용양회(7,300억원), 휴젤(5,119억원)의 순서로 자본준비금 감소 규모가 큼

- 확인된 사례에서 자본준비금 감소 목적을 살펴보면, 일부 법인은 결손보전을 위해 감소한다고 공시하였고, 감소 목적을 공시하지 않은 대부분 법인의 재무제표상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가 상당하여 배당재원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유가증권 시장의 티웨이항공, 하나투어,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큐브엔터는 자본준비금 감소 목적을 결손보전으로 공시함
 -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상당하여 결손보전을 위해 자본준비금 감소를 한 일부 법인의 경우, 자본준비금 감소 규모가 당기순손실보다 큰 경우가 관찰됨에 따라 이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403) 2013년 제2차 임시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를 승인함(자료: 전자공시시스템 DART, 「SK 에너지 2013 분기보고서」, <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 검색일자: 2021. 9. 30.)

404) 주식시장의 모든 법인을 조사한 것은 아니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검색일자: 2021. 9. 15.)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사례를 확인함

405)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가증권(KOSPI)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으로 나누어짐. 코스닥 시장은 정보통신 및 문화 기술(혹은 문화콘텐츠 기술)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이고, 코넥스(KONEX) 시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임(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소개」, <https://open.krx.co.kr/contents/OPN/01/01010301/OPN01010301.jsp>, 검색일자: 2021. 9. 30.)

〈표 IV-14〉 상장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소 사례

(단위: 원)

주식시장	연도	회사명	자본잉여금 감소액 ¹⁾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현황 ²⁾	자본준비금 감소목적 ³⁾
유가증권	2017년	동남합성	157억	이익	배당재원
		롯데지주	1조	- ⁴⁾	배당재원 ⁴⁾
	2018년	현대중공업지주	2조	이익	배당재원
		롯데지주	4조 5천억	이익	배당재원
		JW 중외제약	1천억	이익	배당재원
		JW 홀딩스	7백억	이익	배당재원
		미원상사	45억	이익	배당재원
	2019년	현대건설기계	2천억	이익	(당기)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두산밥캣	2천억	이익	배당재원
		웅진씽크빅	1천 2백억	이익	배당재원
		티웨이항공	280억	결손	결손보전
		일동제약	282억	이익	(당기)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2020년	쌍용양회	7천 3백억	이익	배당재원
		대덕전자	8백억	이익	배당재원
		SGC 에너지	6백억	이익	배당재원
2021년	우리금융지주	4조	이익	배당재원	
	하나투어	8백억	결손	결손보전	
	솔루엠	1천억	이익	배당재원	
코스닥	2017년	솔리드	270억	결손	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2018년	코아시아	1천억	결손	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표 IV-14〉의 계속

주식시장	연도	회사명	자본잉여금 감소액 ¹⁾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현황 ²⁾	자본준비금 감소목적 ³⁾
		네오티스	200억	이익	배당재원
		휴젤	5,119억	이익	배당재원
	2019년	크리스탈지노믹스	1천 8백억	결손	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룽투코리아	300억	결손	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2020년	비즈니스온	330억	이익	배당재원
		맘스터치	179억	이익	배당재원
	2021년	라파스	250억	결손	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큐브엔터	150억	결손	결손보전
		브이티지엠피	520억	이익	배당재원
			지노믹트리	900억	결손
코넥스	2019년	볼빅	75억	이익	(당기)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2020년	볼빅	64억	결손	결손보전 및 배당재원

- 주: 1)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변동내역)에 표시된 자본준비금(또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전입(또는 대체, 이입, 감액, 전환)으로 표시된 내역임
-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변동내역)상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직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후 금액)을 기준으로 양(+의 값은 이익, 음(-)의 값은 결손)으로 표시함
- 3) 감사보고서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잉여금 감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손보전', 그러하지 않고 전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양(+의 값인 경우 '배당재원'으로 기재함. 다만 전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양(+의 값이더라도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결손보전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당기)결손보전', 결손 규모에 비하여 자본잉여금 감액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또는 결손보전 이후 남은 자본잉여금이 존재하거나 이를 배당으로 지급한 경우 '결손보전 및 배당재원'으로 기재함
- 4) 롯데지주는 2017년 4월 인적분할(신설)되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순손실액에 비하여 자본잉여금 감액 규모가 상당하고 감사보고서상 감액목적이 결손보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액목적을 배당재원확보로 보고 '배당재원'으로 기재함
- 자료: 유가증권시장(2017~2020년), 코스닥 시장(2017~2021년), 코넥스 시장(2019~2020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검색일자: 2021. 9. 15.)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2021년)은 전자공시시스템 기타공시(주주총회소집보고서)를 토대로 저자가 요약·정리

- 그리고 확인된 사례 외에도 투자 유인 및 투자원금 조기 회수 목적으로 투자시장 내 자본준비금 감소제도의 활용도가 최근 높은 것으로 보고됨
 - 비상장법인, 투자목적회사(SPC),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 확보, 주주환원, 투자자 출구전략을 목적으로 자본준비금 감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⁴⁰⁶⁾

- 2011년 자본준비금 감소제도의 도입 직후, 관련된 세법 개정이 있었지만⁴⁰⁷⁾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출자환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나 조세남용 방지 사안은 반영되지 못함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현행 우리나라 「상법」 및 세법 규정은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적자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체계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다음 본문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관련하여 과세 누락과 조세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 개선안을 살펴보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적절한 과세를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의 확보 방안을 검토함

나. 세법 규정 개선안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세법 개선안

- 첫 번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주된 쟁점은 주식 장부가액은 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배당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음

406) 자세한 내용은 오종문(2020, pp. 216~218)을 참조할 것

407)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8호) 외 다수

- 국제비교(〈표 IV-13〉 참조)에서 한국과 조사국 간 주주 과세소득은 30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데서 기인함
 - 한국의 주주 과세소득 총액은 5,500만원이고⁴⁰⁸⁾ 조사국(미국, 일본, 독일)은 모두 5,800만원임(〈표 IV-13〉 참조)
 - 조사국은 모두 「회사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세법 규정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함에 따라 과세 누락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⁴⁰⁹⁾

- 다음으로는 법인 선택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주주 과세효과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조세남용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익잉여금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은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허용되므로 주주의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연하거나,⁴¹⁰⁾ 세율차이나 과세대상 차이를 이용한 조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음
 - 재무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준비금 감소제도를 활용한 주주 배당(주식 취득가액 한도)은 주식 양도시점에 전액 실현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주주는 주식 양도에 대한 유인이 매우 낮으므로 과도한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함
 -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차이를 살펴보면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여 14~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은 대주주 20~25%, 대주주 외 10%, 20%⁴¹¹⁾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더욱이 소액주주는 2021년 현행 세법에 따라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2023년 과세되더라도 주식 양도 기본공제(5천만원)의 적용으로 상당한 조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음

408)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409) 주요국의 과세규정 요약은 〈표 IV-8〉을 참조할 것

410)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본문에서도 동일함

41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한 세법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제도를 존중하면서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분만을 보완하는 방안(1안)
 - 1안은 기업의 사적자치를 존중하면서 당장의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지만, 조세납용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재무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선하여 배당재원으로 하는 방안(2안)
 - 2안은 조세납용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신종 자본거래에 대해 통괄적인 주주 과세가 어려울 수 있음
 - 세법상 배당(분배)가능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라도 세법상 이익배당으로 간주하는 방안(3안)을 고려할 수 있음
 - 3안은 과세누락과 조세납용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세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예상됨

가) 1안

- 현행 제도를 존중하면서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양도소득) 초과분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제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과세하거나 또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이 있음
 - 전자는 배당금 수령시점에는 초과분을 세무상 차감 조정항목(△유보)으로 처리하고 주식 양도 시점에는 주식 장부가액에 세무상 가산 조정항목(유보)으로 반영하여 양도 소득으로 과세함
 -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의 과세처리와 일관되지만, 실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이 허용되고 세무조정과 관련된 조세 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후자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시점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배당소득) 다음으로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주주 과세하는 방안으로 주주나 동업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현행 세법 규정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음
- 현행 세법은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나 해산·잔여재산의 분배에서 지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주주가 분배받는 재산 등을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제도에서 분배받는 동업기업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동업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함⁴¹²⁾
 - 해산·잔여재산분배에 기인하여 주주가 분배받는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함

나) 2안

- 2안은 주주 배당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먼저 재원으로 하고, 그 다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허용하는 방안임
- 이 경우 기업회계나 「상법」에 따른 잉여금 금액과 세법에 따른 이익잉여금과 자본준비금 금액은 차이가 발생하고, 주권발행법인은 그 차이를 세무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2안에 따른 주주 과세효과를 <표 IV-9>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주주 과세소득 총액은 조사국과 동일하게 5,800만원⁴¹³⁾이 됨
- 갑법인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선 배당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자본준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3개년 과세대상 배당소득 총액은 2,900만원임

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제1항

413)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를 고려한 경우 주주 과세소득 총액은 3,163만원임

- 20X4년 A, B, a, b가 주식을 모두 매각할 때, 주식 양도소득은 2,900만원임
 -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2,925만원과 양도손실 25만원을 통산함
 - 다만 현행 세법에 따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를 고려하는 경우 양도소득은 965만원임⁴¹⁴⁾

□ 2안은 과세누락이나 이연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행과 같이 통괄적으로 주주 과세를 규정하지 못하며, 새로운 자본 거래의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표 IV-15〉 이익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 과세소득

(단위: 천원)

주주	3개년 배당금	연도별 배당소득 ^{1) 2)}				양도소득 (②)	총과세소득 (=①+②)
		20X2	20X3	20X4	합계(①)		
A	11,000	2,400	1,900	2,950	7,250	9,750	17,000
B	4,400	960	760	1,180	2,900	△100	2,800
a	22,000	4,800	3,800	5,900	14,500	19,500	34,000
b	6,600	1,440	1,140	1,770	4,350	△150	4,200
합계	44,000	9,600	7,600	11,800	29,000	29,000 ³⁾	58,000 ⁴⁾

주: 1) 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고려하지 않음
 2)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먼저 배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하는 것을 가정함
 3) 양도소득 29,250천원과 양도손실 250천원을 통산한 금액임
 4) 현행 세법상 양도손실과 배당소득은 통산하지 않지만, 계산편의상 통산함
 자료: 〈표 IV-9〉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계산·요약

414) A의 양도소득 975만원과 B의 양도손실 10만원을 통산함

다) 3안

- 3안은 세법상 배당(분배)가능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라도 세법상 이익배당으로 간주하는 방안임
-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도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자본잉여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파편적으로만 적용하고 잉여금 배당(분배)을 통괄하여 규정하지 못함
 - 개별 잉여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배당소득 과세를 결정 하는데, 이러한 익금 항목은 실제 법인의 배당가능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조세정책 목적에 의해 반영함
 - 통괄적인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이익잉여금이나 법인 단계에서 익금 처리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실제 회사재산 유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주주 과세함
 - 독자적인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마련한 미국과 일본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등 재산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에 반영 하지 않으므로 실제 재산 유출이 있을 때 주주 과세함
 - 독일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증자된 자본금을 특별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자본감소 등 사안에 대해 특별계정 금액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주주 배당소득 과세함
 - 향후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본거래가 등장할 때 현행과 같이 파편적 규정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리고 현행 세법으로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이용한 조세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상법」과 다른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경우 조사국(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에서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겠지만, 조사국의 접근방식 간 존재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채택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은 소득 측면에 보다 초점을 두고 「법인세법」 과세표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 소득을 재계산함
 - 일본의 배당가능이익은 미국이나 독일같이 소득이나 납입 자본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배당금에서 납입 자본의 감소분과 유보 소득의 감소분을 각각 산출함
 - 독일은 주주 납입 자본을 중심으로 배당가능한 소득을 구하는데, 세무상 대차대조표 자본에서 자본금, 세무상 특별계정, 세무상 출자계정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배당가능한 잉여금으로 처리함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과세정보 확보

- 현행 세법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과세하지만,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자본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므로⁴¹⁵⁾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 원천에 따라 그 재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⁴¹⁶⁾
 - 과세당국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식발행법인에 자본준비금 감액 및 그 사용에 대해 정보제공 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익잉여금에 전입한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법인 소득으로 이루어진 이익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음

415) 일반적으로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앞의 <표 II-4> 참조)

416)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서의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라 증가한 이익잉여금을 '자본준비금 감액분'이라 함

- 법인이 「상법」상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통하여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는 경우, 기업 회계와 법인세법상 재무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본래 이익잉여금과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혼재하게 됨(〈표 IV-16〉 참고)
- 또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경우⁴¹⁷⁾ 그 적립액에도 이익 잉여금에 따른 법정준비금과 자본준비금 감액분에 따른 법정준비금이 혼재하게 됨 - 자본준비금 감액분의 배당에 따라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은 본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성격이므로 기존의 이익준비금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표 IV-16〉 법정준비금 감소제도 전후 우리나라의 재무상태표(예시)

(단위: 원)

계정과목	20X0. 12. 31.		20X1. 12. 31.	20X2. 12. 31.	20X3. 12. 31.
	준비금 감소 전	준비금 감소 후			
자본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자본잉여금 ¹⁾	49,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이익 잉여금	이익준비금 ²⁾	0	400,000	400,000	400,000
	미처분 이익잉여금 ³⁾	10,000,000	55,000,000	59,600,000	52,200,000
자본 총계(순자산)	60,000,000	60,000,000	64,600,000	57,600,000	51,800,000

주: 1) 전액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2)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의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3) 법인소득의 누적금액과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액의 합계금액

자료: 〈표IV-9〉의 예시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한편 일본도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 「회사법」, 세법 모두 잉여금의 원천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기업회계기준 및 「회사법」상 자본항목을 자본금,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기타자본 잉여금 및 기타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음⁴¹⁸⁾

417)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또한 「상법」상 이익배당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며, 이익배당 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한 법정준비금 적립은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고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에 대한 법정준비금 적립은 이익준비금으로 처리함⁴¹⁹⁾
- 세법상 자본 항목은 이러한 회계정보를 토대로 하여 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분 및 본래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구분하여 추적함(〈표 IV-17〉 참고)
 - 자본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로,⁴²⁰⁾ 이익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함⁴²¹⁾
- 일본은 기업회계기준과 「회사법」에서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그 관리가 수월한 측면이 있음

〈표 IV-17〉 법정준비금 감소제도 전후 일본의 재무상태표(예시)

(단위: 원)

계정과목	20X0.12.31.		20X1.12.31.	20X2.12.31.	20X3.12.31.
	준비금 감소 전	준비금 감소 후			
자본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자본준비금 ¹⁾	49,200,000	4,200,000	4,600,000 ²⁾	4,600,000	4,600,000
이익준비금 ³⁾	0	0	0	0	0
기타자본잉여금 ⁴⁾	0	45,000,000	45,000,000	35,000,000	17,400,000
기타이익잉여금 ⁵⁾	10,000,000	10,000,000	14,600,000	17,200,000	29,000,000
자본 총계(순자산)	60,000,000	60,000,000	64,600,000	57,600,000	51,800,000

주: 1) 20X0년은 전액 주식발행초과금이며, 20X1년 이후는 주식발행초과금(420만원) 및 자본준비금 배당에 따른 법정준비금(40만원) 적립액으로 구성됨.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함
 2) 일본은 자본금의 1/4이 될 때까지 잉여금 배당의 1/10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비교목적상 우리나라와 동일한 금액(40만원)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였다고 가정함
 3) 기타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4)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라 증가한 잉여금
 5) 법인소득의 누적금액으로만 구성됨
 자료: 〈표IV-9〉의 예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8) 일본 계정과목 용어집 사이트, 「資本剰余金」, https://kanjokamoku.k-solution.info/2005/03/_1_136.html, 검색일자: 2021. 8. 18.
 419) 일본 「회사계산규칙」 제22조 및 제23조
 420) 일본 「회사계산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421) 일본 「회사계산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을 개정하여 자본항목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의 개정을 통해 자본항목을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법인 소득인 이익잉여금과 납입 자본인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관리하는 방안임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인 합계대차대조표 또는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갑)를 보완하여 활용 가능할 것임
 -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 자료가 아닌 법정 신고 자료를 통하여 준비금 감액배당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개편이 어려운 경우, 「상법」상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활용한 주권상장법인에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거나, 감액배당 전후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권기범, 「무액면주식에 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3호, 법무부, 2013, pp. 28~51.
- 권중호, 「일본 신회사법의 특징과 시사점」, 『상장협연구』, 제54호, 한국상장사협의회, 2006.
- 김무열,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2호, 2020, pp. 195~227.
- 김종근,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종근·박훈,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법협회, 2016, pp. 183~223.
- 김춘, 「이익배당 -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월간상장』, 2004년 1월호, 한국상장사협의회, 2004, pp. 75~83.
- _____, 「주식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손영화, 『상법상 자본제도의 개선방안』, 2006.
- 송동진, 「사외유출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심영,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미실현이익」,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상장사협의회, 2014, pp. 43~71.
- 오종문,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2권 제4호, 2020.
- 이영철, 「현물배당제도에 관한 쟁점사항의 검토」,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4, pp. 197~228.
- 이정미, 『실무자를 위한 미국 세법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6.

- 이준봉, 「일본회계참여제도 및 잉여금배당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pp. 6~43.
- _____, 「일본 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 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7, pp. 167~215.
- 이창희, 『미국법인세법』, 박영사, 2018.
- 임상엽, 「의제배당 과세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산 분배를 중심으로」, 『조세와 법』, 제11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 155~202.
- 정순현, 『독일 회사법 개설』, 도서출판 한아름, 2019.
- 정준혁, 「2011년 개정상법이 배당실무에 미친 영향」, 『상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상장사협의회, 2018, pp. 197~231.
- 최준선, 『주식회사 자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2006.
- _____,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상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2, pp. 219~241.
- 최준선·권종호·김순석·김은경·심영·원용수·전삼현, 『상법의 편별 개별입법화 방안 비교법제 연구-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EU, 일본의 상사법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9.
- 한국상장사협의회, 『개정상법상 주요제도 변경내용 해설』, 2011.
- 한상범·김문현·김란영·이은정, 『한국·미국·일본의 배당제도 비교와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2.
- 황남석,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개념과 한계」,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pp. 207~245.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https://open.krx.co.kr/>

독일 DB 플랫폼, <https://datenbank.nwb.de/>

독일 세무신고 플랫폼, <https://www.steuba.de/>

- 독일 조세정보 플랫폼, <https://www.smartsteuer.de/>
- 일본 SBI증권, <https://faq.sbisec.co.jp/>
- 일본 계정과목 용어집 사이트, <https://kanjokamoku.k-solution.info/>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 금융청, <https://www.fsa.go.jp/>
- 일본 법무부, <https://www.moj.go.jp>
- 일본 현지 세무사무소, <https://www.tax-support.xyz>
- 大和市, <http://www.city.yamato.lg.jp/>
- 東日本銀行, <https://www.higashi-nipponbank.co.jp/>
- 山口剛史 税理士事務所(일본 현지 세무사), <https://ty-tax-accountant.com>
-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For use in preparing 2020 returns,” Publication 550, 2021.
- Bloomberglaw, <http://www.bloomberglaw.com/>
- Haufe, <https://www.haufe.de/finance/>
- IRS, <https://www.irs.gov/>
- KPMG Japan, <https://home.kpmg/jp/>
- Tax foundation, <http://taxfoundation.org/>
- UK Practical Law,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

세법연구 21-05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주주 과세효과 -

발 행 2021년 9월 30일
저 자 전병목 · 박수진 · 서동연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디자인범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080-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